

2022년도 서울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사업

제16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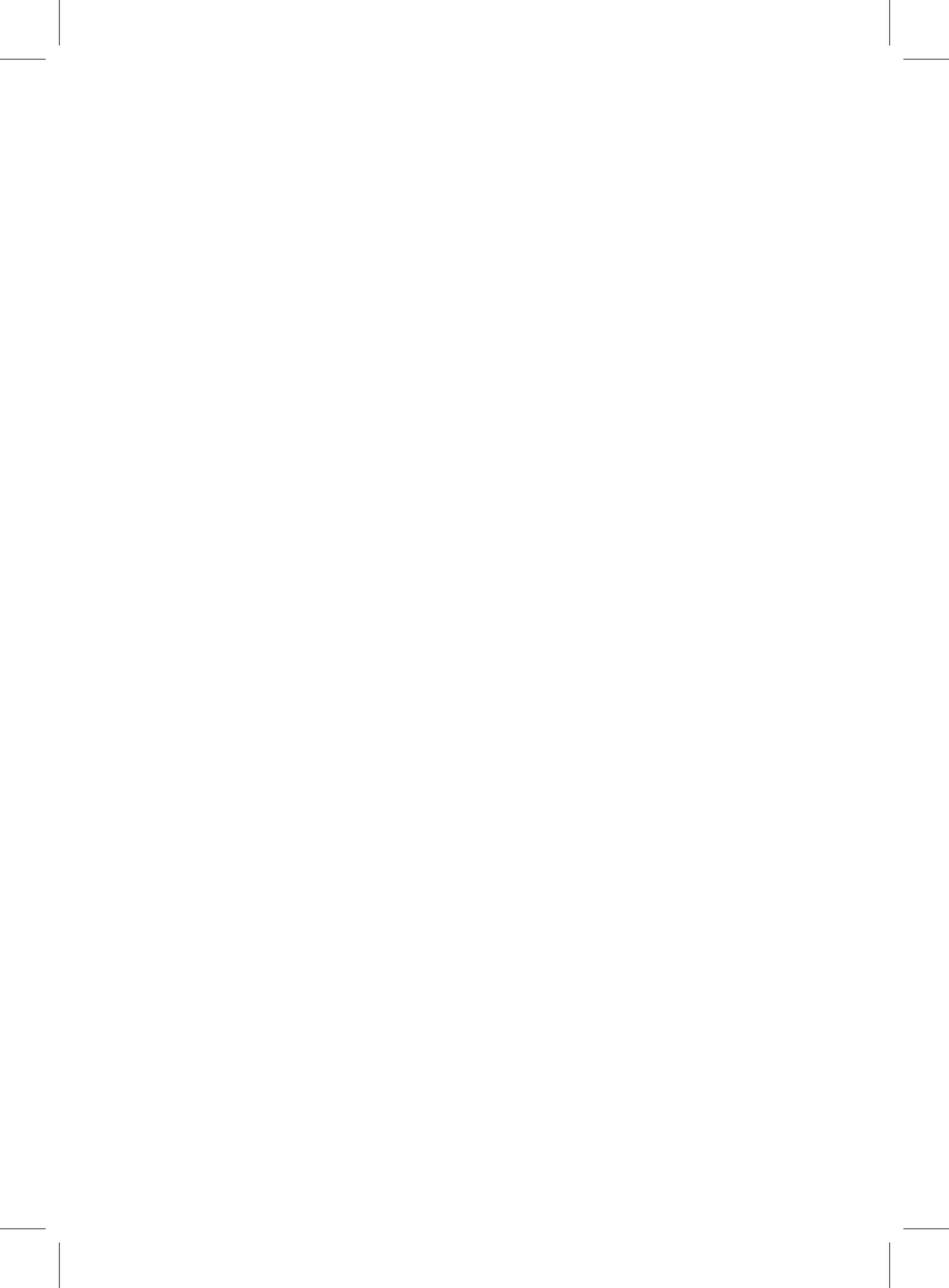
일 시 : 10월 18일 ~ 11월 03일 14시 ~ 17시

장 소 : 여의도이룸센터 2층 소교육실

주최 및 주관 :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 원 :  서울특별시





목 차

Contents

| |
|---|
| 1강 UN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7 조미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 2강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33 김경양 [서울시장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센터장] |
| 3강 장애인의 건강권 45 홍종원 [건강의집의원 대표원장] |
| 4강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이해 및 옹호를 위한 지원방안 127 양숙미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5강 장애인의 정치참여와 새 정부 장애인 정책의 방향 155 조한진 [대구대학교 대학원 장애학과 교수] |
| 6강 한국사회 여성장애인 실태 및 정책분석 169 서해정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 전환지원팀장] |
| 부록 201 참고자료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참고자료 2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 참고자료 3 [서울시장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 의사소통 카드] |





제16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UN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 1강 -

- 일 시 : 2022년 10월 18일 (화) 14:00~17:00
- 장 소 : 여의도 이룸센터 2층 소교육실
- 강 사 : 조미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변호사]





16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20221018]



UN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 강사 소개: 조미연 변호사



국내최초 공익활동을
본업으로 삼은 **공익변호사단체**

현재 기부후원을 기반으로
변호사 10명 포함
총 구성원 13명이 활동 중

홈페이지: <http://www.kpil.org>

| | | | |
|---------------|---------------|-------------|--------------|
| <p>여성인권</p> | <p>장애인권</p> | <p>취약노동</p> | <p>성 소수자</p> |
| <p>이주와 난민</p> | <p>빈곤과 복지</p> | <p>국제인권</p> | <p>활동 영역</p> |
| <hr/> | | | |
| <p>공익소송</p> | <p>법제개선</p> | <p>토론회</p> | <p>법률교육</p> |
| <p>캠페인</p> | <p>기자회견</p> | <p>실태조사</p> | <p>활동 방식</p> |
| <hr/> | | | |

진행

1. 우리 이야기
2.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
3. 장애인차별금지법
4. 질의응답

1. 우리 이야기

자기소개 및 생각나눔

A

초'간단 자기소개

B

장애인권리협약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하면
생각나는 ISSUE



2.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

Q. UN이란?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발족했으며
원칙적으로는 각국의 전쟁을 막고 대화 교섭을 찾자는 명분으로
국제 연맹의 역할을 사실상 대체하게 되었다.

기존과는 달리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등 세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 주권국으로 인정되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유엔 회원국이다.

뉴욕에 있는 본부에서는 매년 총회를 열어 주요 안건을 상정 및 논의한다.
본부는 미국 뉴욕에 있으며, 네덜란드 헤이그에 국제 사법 재판소를 두고 있다.
사무국은 케냐 나이로비(유엔 나이로비 사무국), 오스트리아 빈(유엔 빈 사무국),
스위스 제네바(유엔 제네바 사무국)에 위치하고 있다

Q. 국제인권법이란?



- 1945년을 현재 국제인권법 체제의 시작으로 봄
 - 2차 대전 종전 이후 UN체제의 산물로 지금까지 이어짐
- 인권이 이때 발명된 것이 아니라 인권이 최초로 국제적 관심사가 된 것을 의미
 - 1945년 6월 26일 **유엔헌장**
 - 55조, 56조에 인권 언급. 다만, 인권 목록은 없음
 - 이후 인권규범을 만들기 위한 체제를 수립해 나감
 -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 이후 현재 UN 9개 핵심인권협약으로 이어짐

Q. UN 9개 핵심인권협약



| 영어 약어 | | 수립일 | 당사국 |
|--------|----------------------------|---------------|-----|
| ICERD | 인종차별철폐협약 | 1965. 12. 21. | 182 |
| ICCPR |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자유권규약) | 1966. 12. 16. | 173 |
| ICESCR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사회권 규약) | 1966. 12. 16. | 171 |
| CEDAW | 여성차별철폐협약 | 1979. 12. 18. | 189 |
| CAT | 고문방지협약 | 1984. 12. 10. | 171 |
| CRC | 아동권리협약 | 1989. 11. 20. | 196 |
| ICMW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 1990. 12. 18. | 56 |
| CPED | 강제실종협약 | 2006. 12. 20. | 63 |
| CRPD | 장애인권리협약 | 2006. 12. 13. | 182 |

UN 세계인권선언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 ① 있다 ② 없다

UN 장애인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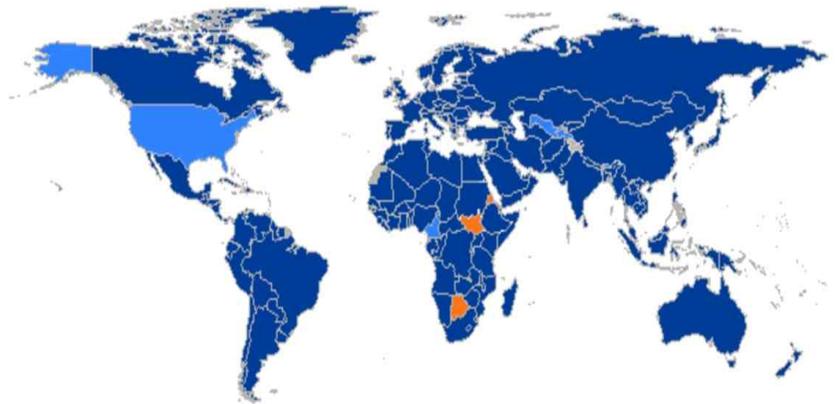
①있다

②없다



[공식번역 사이트] <http://hrlibrary.umn.edu/instree/K-disability-convention.html>

CRPD 당사국 현황



국가 상태

■ 당사국 (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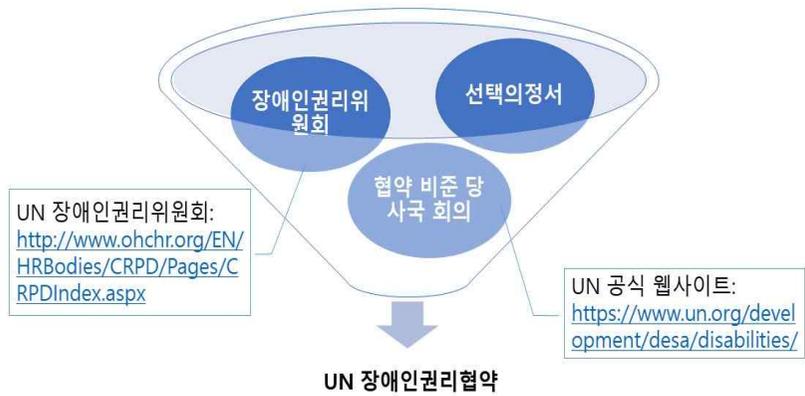
■ 서명자 (9)

■ 조치 없음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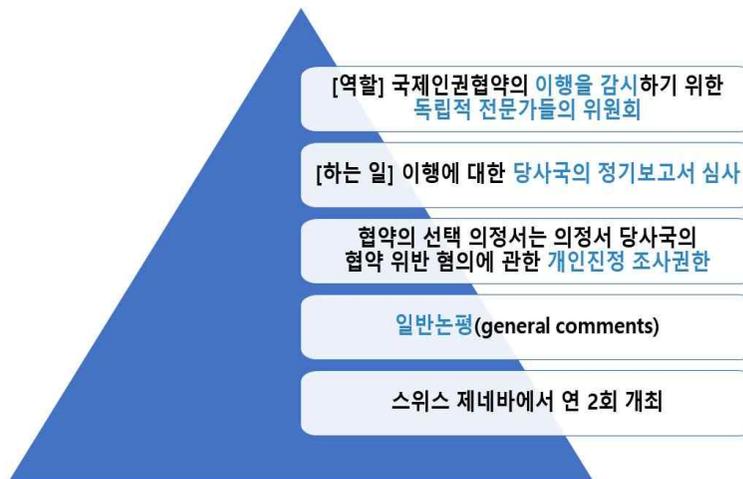
▨ 개별 통신 절차

▨ 문의 절차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



UN 장애인권리위원회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선택의정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선택 의정서란,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 '개인통보 (IndividualCommunication)' 제도 및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조사권'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협약 위반에 따른 제소).

장애인권리협약의 개요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

| | |
|-------------|---|
| 영문 약칭: CRPD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 연혁 | 2006. 12. UN 총회에서 채택, 2008. 5. 발효. |
| 내용 | 전문(25개 사항), 본문(50개 조항) 및 선택의정서(18개 조항) 구성 |
| 한국 | 2008. 12. 국회 비준 동의, 2009. 1. 국내 발효 / 선택의정서 비준 유보 |

장애인권리협약의 필요성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

- 국제개발 정책에서 간과된 장애인 이슈: 최소 전세계 장애인의 15%가 장애인(70억 명 중 10억 명 추정, 이중 8억 명은 저개발국에 살고 있음_세계은행과 세계보건기구 보고서)
- 기존의 인권협약들은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제공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실현되지 않고 장애인의 인권은 협약 이행 과정에서 간과되어 세계 각 국가에서 장애인은 한계와 차별에 직면.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비준당사국들의 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의무를 규정.**

장애인권리협약의 핵심가치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

존엄성,
인권과 자유
융화(Inclusion)

- 제1조 목적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것”
- 제3조 일반원칙 “가.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다.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성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성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

| | |
|--------------------------|--|
| 평등과 차별금지(5조) | 사법접근권(13조) |
| 장애여성(6조) | 개인의 자유와 안전(14조) |
| 장애아동(7조) | 고문 또는 잔혹,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및 처벌로부터의 자유(15조) |
| 인식제고(8조) | 착취,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자유(16조) |
| 접근성(9조) | 개인의 존엄성 보호(17조) |
| 생명권(10조) | 이주 및 국적의 자유(18조) |
| 위험상황 및 인도적 차원의 위급상황(11조) | 자립적으로 생활하기와 사회통합(19조) |
| 법 앞에서의 평등(12조) | |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성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

| | |
|---------------------------------|--------------------------|
| 개인의 이동(20조) | 통계와 자료 수집(31조) |
|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성(21조) | 국제협력(32조) |
| 사생활 존중(22조) | 국내적 이행 및 모니터링(33조) |
| 가정과 가족의 존중(23조) | 장애인권리위원회(34조) |
| 교육(24조) 건강(25조) 재활(26조) | 정부보고서(35조) |
| 근로와 고용(27조) | 보고서 심의(36조) |
| 적정한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보호(28조) | 각 국과 위원회 간의 협력(37조) |
|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29조) | 위원회와 기타 기구와의 관계(38조) |
|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과 스포츠 참여(30조) | 위원회 보고서(39조) 정부간 회의(40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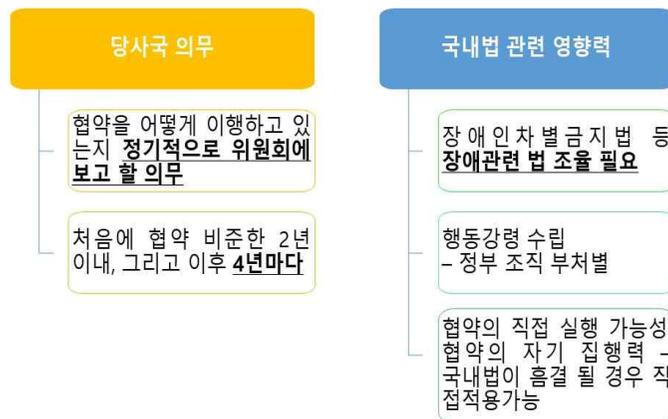
장애인권리협약의 효력

국내에 미치는 영향



장애인권리협약의 효력

국내에 미치는 영향



대한민국 제1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2014년)

국내에 미치는 영향

- 의료적 장애모델에 대한 우려, 선택의정서 비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제고 등
- 장애여성 등의 강제 불임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 장애를 가진 이주민이 기본적인 장애 서비스를 제한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 개발, 활동보조 서비스 포함 지원서비스 대폭 확대 등
- 한국 수화를 자국의 공식 언어로, 점자를 자국의 공식 문자로 인정할 것
- 장애아동 부모가 가족 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지원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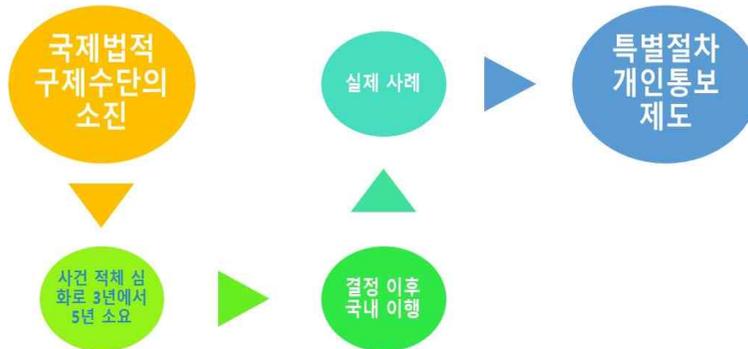
개인통보제도의 의미

국내에 미치는 영향



개인통보제도의 한계 및 가능성

국내에 미치는 영향



3. 장애인차별금지법

PART 3. 장애인 관련 법령



키워드 검색: 장애

Q. '장애인'하면 떠오르는 법은?

Part3.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제정취지

제1조(목적) 모든 생활영역에서

1.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2.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3.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려는 것.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Part3.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주요내용



제2조 '장애와 장애인'



제4조 차별행위의 범위



제10조 내지 제32조
차별금지영역



제4장 차별시정기구와
권리구제,
제5장 손해배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 (장애와 장애인)

-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

-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PART 3.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 권리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및 그 내용



PART 3.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 권리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및 그 내용_고용

제10조(차별금지)

- ①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①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학적 검사의 실시)

- ① 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 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의 비용부담 방식 및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PART 3.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 권리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및 그 내용_교육

제13조(차별금지)

- ①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울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6. 7.>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1.>
- 제3항 내지 제8항 생략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 제1항 각호 내지 제3항 생략

PART 3.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 권리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및 그 내용_재화용역

| | | | |
|--|---------------------------------------|-------------------------------------|---------------------------|
| 제15조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제16조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제17조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제18조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
| 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 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 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제22조 (개인정보보호) |
| 제23조 (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제24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 제25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 |

PART 3.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 권리

장애인의 권리 구제 절차

제38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43조(시정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PART 3.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 권리

장애인의 권리 구제 절차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① 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PART 3.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 권리

장애인의 권리 구제 절차_소송사례



국제인권협약의 국내적 가능성

국내에 미치는 영향



궁금하고 의아했던 내용을 나누어주세요

Q n A

오늘 교육에서 기억에 남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제16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 2강 -

- 일 시 : 2022년 10월 20일 (목) 14:00~17:00
- 장 소 : 여의도 이룸센터 2층 소교육실
- 강 사 : 김경양 [서울시장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센터장]





의사소통 권리 -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기다림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김경양

의사소통...

오늘 점심은
뭐 드셨어요?



이미지 출처:
<http://www.youtube.com/watch?v=ZYLQ77fE6E4>
www.google.com

의사소통이란..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형태)으로 의사소통함
가장 좋은 방법은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직접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기 원하는지 물어보는 것임

최소 2인 이상의 청자와 화자가 개인의 생각, 감정, 의견, 정보 등을 주고 받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의사소통을 하고 있음

의사소통 권리

- 의사소통은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 중 가장 기초가 됨
- 모든 사람은 의사소통 함

- 때때로 우리는 의사소통의 단절을 경험하지만....
-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의도를 이해하려고 경청해 주는 청자의 태도임
- 내가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보다 듣고자 하는 청자가 기본적인 태도가 장애인들에게는 더 중요함
- 따라서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는 단순히 의사소통 수단을 개발하는것이 목적이기 보다는 사회의 인식 개선과 태도 함양이 함께 증진되어야 함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란...

-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다음 네 가지 영역에서의 어려움을 의미함

- ① 말하기
- ② 타인이 말하는 것에 대한 이해하기
- ③ 읽기
- ④ 쓰기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란...

- 청각장애: 청력 손상으로 인해 타인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구어 사용에 제한이 있기도 함
- 뇌병변장애: 운동성 장애는 근육을 사용하여 말하고, 제스처 하고 쓰는데 제한을 갖게함
- 지적장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기억, 학습, 이해, 문제해결 등에 제한이 있는 경우
- 언어장애: 실어증, 기타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 중복장애: 한 가지 이상의 장애가 동시에 발현되는 경우

어떤 장애가 있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의사소통 할 수 있고 해야 함
누구나 적절한 지원이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음

의사소통 장벽

- 사람들은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면 마치 전혀 소통할 수 없는 것처럼 여긴다.
- 물어보지 않고...
- 의견이 없을 것이라 가정하며..
- 아이처럼 대하거나..
- 기다려주지 않는다..



의사소통 권리와 접근성의 보장이 필요한 경우

각각의 개인이
의견을 낼 때보다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얻어야
할 때 필요함



UN장애인권리협약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당사국은 이 협약 제2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얻고 전파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가) 일반 대중을 위한 정보를 다양한 장애유형에 적합하게 접근 가능한 형식과 기술로 장애인에게 시의적절하고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할 것

(나) 장애인의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 장애인의 선택에 따른 수화, 점자, 확장적이고 대체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의사소통의 기타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식 및 형식의 사용을 수용하고 촉진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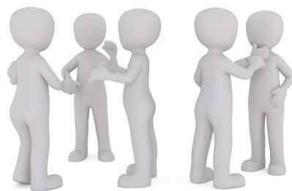
(다) 인터넷 경로를 포함하여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체가 장애인에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구할 것

(라) 언론 매체의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자를 포함한 언론 매체를 장려할 것

(마) 수화의 사용을 인정하고 증진할 것

의사소통 권리와 접근성의 보장이 필요한 경우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얻어야 할 때 필요함



관공서

교육기관

직장

여가/지역사회

개인정보 확인,
필요한 정보 얻기,
전화하기,
메신저 활용하기,
이메일하기,
SNS 활용하기,
텍스트나 활자 정보 얻기,
제품 설명 얻기,
필요한 도움 요청하기,
활동에 참여하기 등



의사소통 권리 (NJC website at: www.asha.org/njc)

1.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사회적 접근성을 유지하며 관계를 쌓을 수 있는 권리
2. 요구하는 것을 물건, 행동, 사건, 사람 또는 **선택들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원하지 않는 물건, 행동, 사건, 사람 또는 선택들을 **거절하거나 배척할 수 있는 권리**
4. 개인적인 **선호성과 기분들을 표현 할 수 있는 권리**
5. 의미 있는 **대안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

의사소통 권리 (NJC website at: www.asha.org/njc)

6. 의견을 말하고 의견을 공유할 권리 (**내 생각을 말 할 수 있는 권리**)
7. 일상 및 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할 권리**
8. 일상적 생활 속에서 겪는 사건 또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야 하는 권리**
9.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중재 및 지원에 접근 할 권리**
10. 의사소통 법률, 의안을 가지고 이를 토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는 권리 (**불의에 대응 할 수 있는 권리**)

의사소통 권리 (NJC website at: www.asha.org/njc)

11. 적절한 AAC 및 기타 보조기술 서비스 및 장치에 항상 액세스 할 수 있는 권리
(적절한 과학보조기술 및 장치를 사용 할 수 있는 권리)
12. 동료들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의 **완전한 커뮤니케이션 파트너로서 참여를** 촉진하는 환경적 상황, 상호 작용 및 기회에 액세스 할 수 있는 권리
13.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와 존중과 예의를 지켜 대해져야 할 권리**
14. 스스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권리 및 타인의 대변을 안 받을 수 있는 권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권리**)
15. 명확하고 의미가 있으며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적절한 의사소통을 할 권리**



How

누가, 언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전 생애에 걸친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

의사소통은 인간의 삶에서 평생에 걸쳐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이다!!



"It is important for CAYA to be there for me as my communication needs will change as I become more independent and without them I won't be able to grow and adapt to my changing social world. Also, there will be malfunctions in my device that will need the assistance of CAYA. Without CAYA's help and support communication with my outside world, my quality of life, could very well be null and void."

<http://www.cayabc.org/>

매 순간 의사소통을 위한 습관!

-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자주성!
- 나의 의도에 따라!! 의사소통 권리

We need
MAP!
NOT
GPS



- "나의 의도에 따라 나의 방식으로 의사소통한다!"

서울시 의사소통권리 조례
부산시 의사소통권리 조례.....

조례의 재정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함!

의사소통을 위한 팁(Tip)

- 1) 친절하고 친절하십시오.
- 2) 품위 있고 존중하는 사람을 대하십시오.
- 3) 서로 다른 의사소통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4)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 5) 조용한 장소를 찾으십시오.
- 6) 경청합니다.
- 7) 이해하는 척하지 마십시오.
- 8)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으면 상대방에게 알려주세요.



의사소통을 위한 팁(Tip)

- 9) 어려움이 있습니다.
- 10)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질문하십시오.
- 11)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 할 수 있습니다.
- 12) 이해하지 못하면 반복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 보라고 요청하십시오.
- 13)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다시 확인하십시오.
- 14) 사람에게 직접 말하고 눈을 마주 치십시오. (간혹 당신이 그들을 보길 원하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위한 팁(Tip)

- 15) 인내심을 갖고 그 사람에게 응답 할 시간을 주십시오.
- 16) 질문을 하면 상대방의 답을 기다리십시오.
- 17)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면 말한 내용을 반복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말하세요.
- 18) 정상적으로 말하십시오. 목소리를 높이거나 말을 늦출 필요가 없습니다.

제16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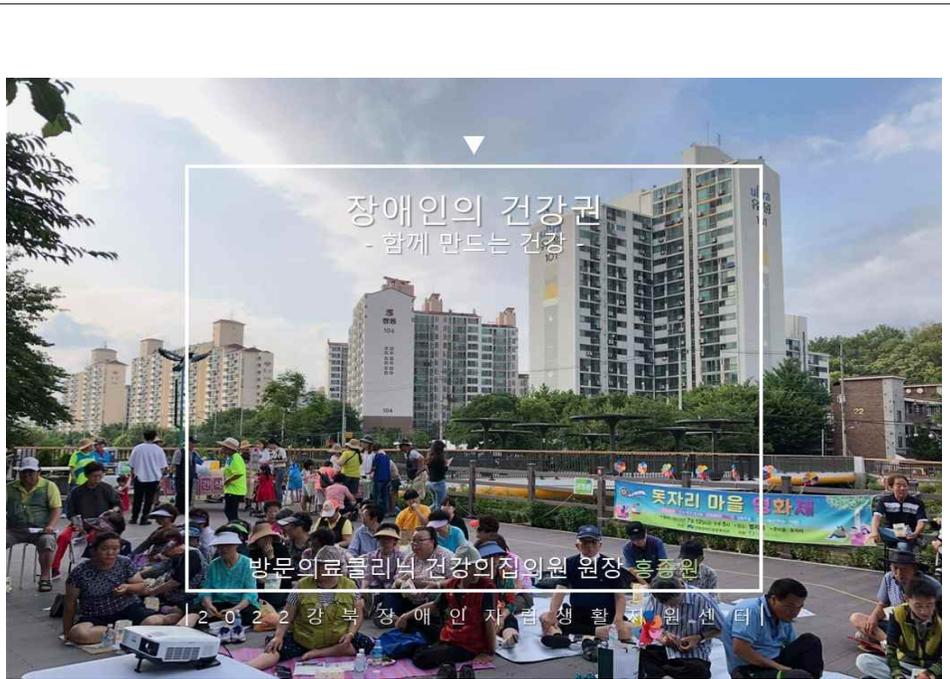
[장애인의 건강권]

- 3강 -

- 일 시 : 2022년 10월 25일 (화) 14:00~17:00
- 장 소 : 여의도 이룸센터 2층 소교육실
- 강 사 : 홍종원 [건강의집의원 대표원장]







이야기 순서

1. 코로나 시대 건강관리
2. 장애인 건강 현황 및 장애인 건강권
3. 사회적 건강의 이해
4. 커뮤니티 케어와 장애인건강주치의
5. 만성질환 관리
6. 낙상예방과 응급상황 대처
7. 정리

코로나 장애인의 삶

- 정보접근 어려움
 - 수어 통역, 자막 부족, 발달장애인 등 고려 부족
-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 검진체계에서의 장애 접근성 부족
- 비장애인 성인 중심의 자가격리 시스템
 - 자가격리 장애인에 대한 위생, 생활 지원 가이드라인 부재
- 장애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고위험군 분류
 - 신장이식 장애인에 대한 대책 부족
-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지원대책 부재
 - 병원, 생활치료 센터에 장애인 시설 부재
- 기존 의료 자원 한계 및 의료 할당으로 인한 장애인 의료 공백
 - 평소 다니던 병원의 시설 폐쇄 시 대책 없음

2020.06.23코로나19와 장애인의 삶 장애인 종합대책 마련 토론회, 국회의원 남인순, 배진교, 장혜영 등, 전근배(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정책국장 발제문)

코로나로 인한 자립생활의 어려움

- 장기화에 따른 지원체계 붕괴
 - 집단 프로그램 및 활동 어려움
- 돌봄과 생계를 동시에 감내해야 하는 장애인 가족 문제 증가
 - 돌봄 공백으로 인한 생계 악화
 - 장애인 자녀 양육하는 가구의 돌봄 피로도 증가
- 코로나 지원 정책 접근 어려움
 - 중앙 정부 재난지원금 등 접근 어려움

2020.06.23코로나19와 장애인의 삶 장애인 종합대책 마련 토론회, 국회의원 남인순, 배진교, 장혜영 등, 전근배(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정책국장 발제문)

개인 차원의 예방

- 마스크와 손 씻기
- 점막 표면을 막기(코, 입, 눈 등)
- 초기 증상 발열, 피로, 기침 ... 휴식
- 과도한 불안감은 좋지 않음... 우울감 유발
- 휴식!
- 나의 삶 돌아보기
- 개인 차원의 예방은 사회적 변화를 어떻게 만들까?

집단 차원의 예방

- 백신 접종! 건강 관리
- 날씨와 관계없음
- 고위험자에 대한 배려... 증상이 있으면 휴식 권유
- 마스크, 손 씻기, 물리적 거리 두기!
- 만성질환 관리(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 공동체 예방과 사회의 신뢰감은 어떻게 공존할까? **성찰의 기회**

우리의 건강을 저해하는 요인?

2020.08.25 장애인 건강불평등 해소와 방문형 보건요서비스 도입을 위한 토론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장애인의 건강 상황

- 의료 요구도의 미충족
 - 의료 요구도 미충족은 과거 12개월 동안 의료가 필요할 때 한 번이라도 의료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 병원에 가지 못한 적
 - 비장애인 12.1% -> 9.1% (14-18년)
 - 장애인 19.1% -> 17.0% (14-17년)
-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유
 - 비장애인 1위 시간이 없어서, 2위 증상이 가벼워서, 3위 경제적 이유, 4위 무서워서, 5위 교통 불편
 - 장애인 1위 경제적 이유, 2위 의료기관까지 이동의 불편함, 3위 시간이 없어서, 4위 동행할 사람이 없어서, 5위 증상이 가벼워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8 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조사

장애인의 건강 상황

| 미충족 의료 발생 이유 | 장벽 |
|----------------|-------|
| 경제적 이유 | 의료비 |
| 의료기관까지 이동의 불편함 | 이동수단 |
| 동행할 사람이 없어서 | 인적 지원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장애인의 건강 상황

- 건강 요구도
 - 1위 장애 관리 및 재활서비스(31.1%)
 - 2위 만성질환 관리(28.3%)
 - 3위 건강상태 평가 및 관리(22.9%)
 - 4위 건강검진서비스
 - 5위 일반진료서비스
 - 6위 예방접종서비스
 - 7위 구강보건서비스

장애인의 건강 관련 서울시 실태1

- 장애인의 열악한 건강상태
 -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전국 장애인 중 50.2% 건강 상태 나쁘다고 이야기해
- 2차적인 심리적인 건강 문제
 - 28.1% 1년 동안 2주 연속 우울감, 절망감, 22.5%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
- 저조한 생활체육 참여
 - 운동시설 접근성 부족, 장애인에 적합한 방식 교육 부재
- 의료서비스 접근의 제한
 - 의사소통의 문제, 의료진의 장애 인식 부족 등

장애인의 건강 관련 서울시 실태2

-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
 - 일반검진 수검률 장애인 67.3%, 비장애인 77.7%(2016 조사)
- 건강증진 사업에서 장애인 당사자 주도성의 미흡
 - 전문가 의견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예방 서비스가 다양해질 필요 있음

2020.08.25 장애인 건보평등 해소와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 도입을 위한 토론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우리는 건강한 권리가 있다 ?

2020.08.25장애인 건강불평등 해소와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 도입을 위한 토론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장애인 건강권

- 19세기 20세기 초에 장애인을 생물학적 의학적 지식에 기초한 의료 모형으로 장애인의 건강을 개인 문제로 간주
- 치료와 의료서비스 제공에 초점
- 1970년대 장애인의 건강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인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관점으로 전환하는 사회 모형 등장
- UN은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따라 장애인 건강권을 장애인 인권의 하나로 간주

장애인 건강권

- 제 25조(건강)
-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 없이 달성 가능한 최고의 건강 수준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 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에 민감한 보건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국은 다음을 해야 한다.

장애인 건강권

- a. 성, 출산 건강 영역 및 전 주민에 기반을 둔 공중 보건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된 것과 같은 범위, 질, 수준의 무상이나 알맞은 가격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장애인에게 제공함
- b. 적절한 조기 확인, 개입을 포함하여 장애 때문에 장애인이 특히 필요로 하는 보건 서비스 그리고 아동과 노인을 포함하여 더 이상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함
- c. 시골 지역을 포함하여 가급적 사람들의 자신의 지역사회 근처에서 이들 보건 서비스를 제공함

장애인 건강권

- d. 특히 훈련 및 공적, 사적 의료에 대한 윤리 규범의 공표를 통하여 장애인의 인권, 존엄, 자율, 욕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자유롭게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같은 질의 보호를 장애인에게 제공하도록 보건 전문가에게 요구함
- e. 건강보험의 제공 그리고 국내법이 생명보험을 허가하는 경우에 그 생명보험의 제공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그러한 보험을 공정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제공함
- f. 장애를 근거로 의료, 보건 서비스 또는 식, 음료의 차별적 거부를 방지함

장애인 건강권

- 건강은 인간 존엄성 유지에 필수적 요소
- 건강권은 모든 이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
- 장애인 건강권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와 건강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함
- 장애인 건강권 보장은 장애를 완전히 치료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건강한 삶'을 우리 사회가 보장하는 것

공동체를 살펴 보면

로제토 효과

미국 펜실베이니아
오클라호마의대 스텐워드 울프고수
담배 많이 피고/과체중
질병으로 사망률이 미국 평균보다 35% 낮았다
자살이나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이 거의 없다

**'로제토 주민들의 건강 비결은 유전, 환경, 식생활, 운동 등 물리
적인 것이 아니라 친밀한 유대감'**

3대가 같이 살고
주민들의 다양한 모임
공동으로 일하고 놓고 이야기를 나눔
공동생활이 노화에 대한 저항력을 높임
높아갈 수록 친구를 준비하라

장수하는 법은 좋은 사람과 같이 지내는 것

호주의 장수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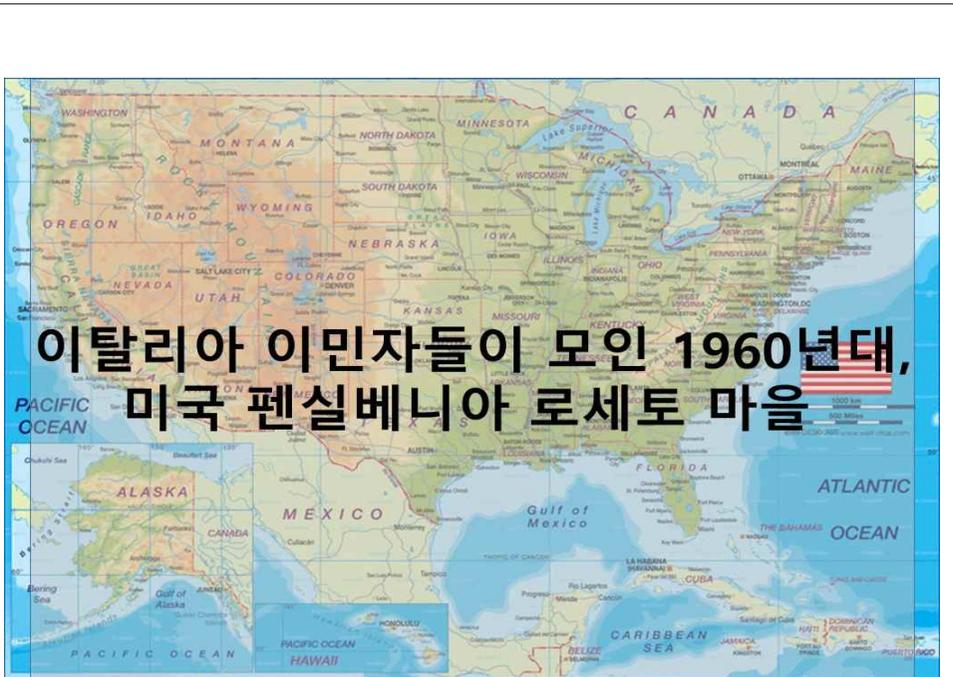
•1992년 부터 시작된 연구인데 70세 이상의 노인 약 1500명
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의 친밀도가 지대, 장수, 질병 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본 연구입니다.

•제일 중요한 발견은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 중(어린이, 가족,
친구, 그냥 아는 사람)에 놀랍게도 친구관계가 좋은 사람이 그
렇지 않은 사람보다 장수할 기회가 무려 22% 나 많다는 것입
니다.

•끈끈한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요양원에 갈 위험이 외톨박
이의 반 밖에 되지 않았고요. 심지어 기억과 인지능력의 감퇴
도 훨씬 적게 왔다는 사실입니다.

로제토 효과 (Roseto Eff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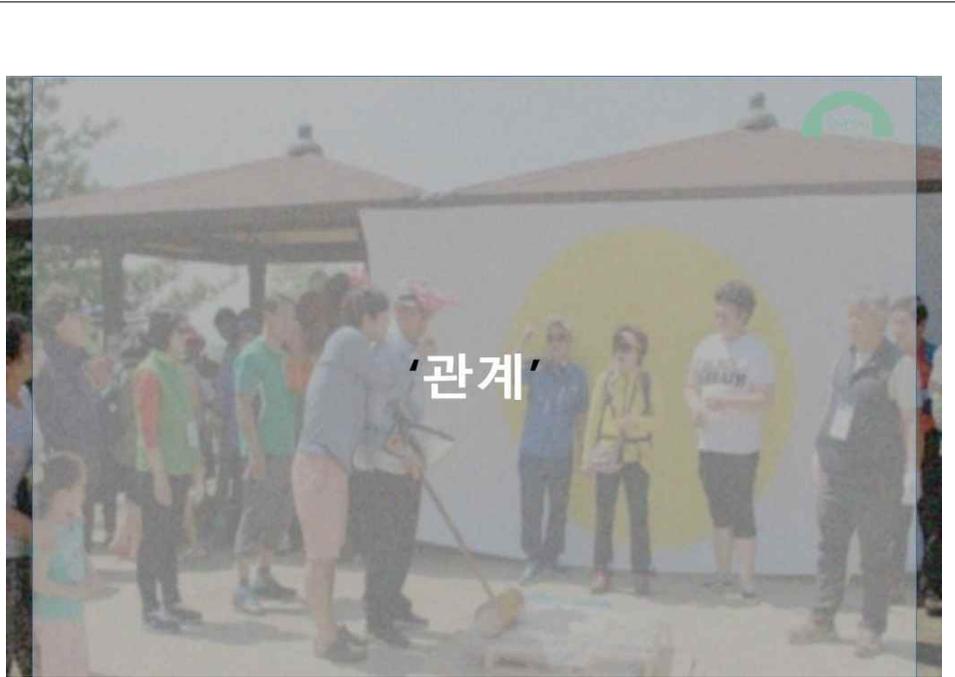
김승섭, 2017. 아픔이 길이 되려면. 동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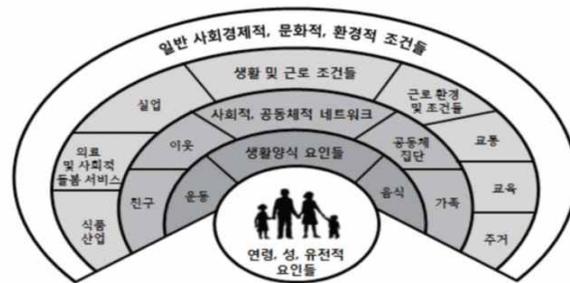
그곳에선 왜 심장병 발생이 이리 적은가?

“로제토마을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사람들이 삶을 즐기는 방식이었다. 그들의 삶을 즐거웠고, 활기가 넘쳤으며 꾸밈이 없었다. 그 공동체는 계층이 없는 소박한 사회였으며, 따뜻하고 아주 친절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신뢰하였으며 서로를 도와주었다.”

Stout C, Morrow J, Brandt EN, Jr, Wolf S. 1964.
"Unusually low incidence of death from myocardial infarction: Study of an Italian American community in Pennsylvania". JAMA 188:845-849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1991. Dahlgren and Whitehead.

생활터 접근의 건강한 마을 만들기

건강은 건강한 마을에 깃든다

삶과 건강의 기본단위로서 : 건강한 물리적 환경 + 사회적 환경

- 건강한 물리적 환경 건전한 생태계 + 건강에 유리한 건조 환경 (built environment)
- 강한 사회적 환경: 건강한 공동체 : 사람들 간의 건강한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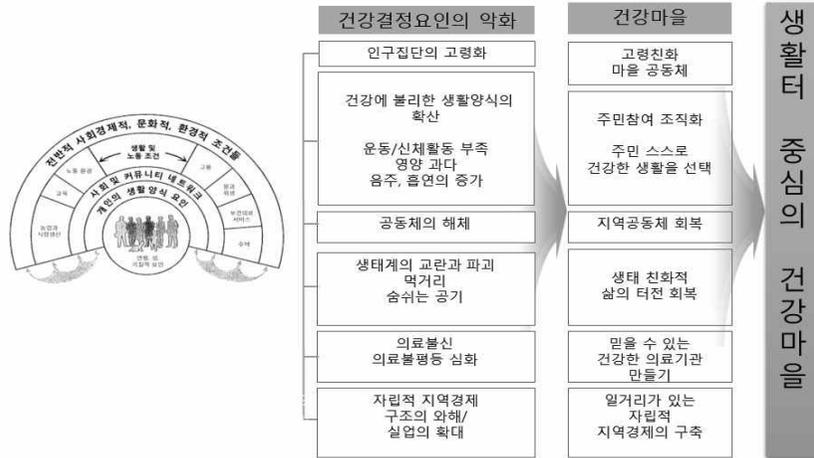
복지건강마을 패러다임의 변화 : 주체와 방식의 변화

서울시 복지건강마을의 전개과정, 경기대 이영범



생활터 접근의 건강한 마을 만들기

건강한 생활터, 마을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한다



건강한 공동체?

•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social determinant of health)

- 소득과 사회적 지위
- 가족 구성과 사회적 관계
- 마을에 대한 인식과 참여 수준
- 물리적 환경과 사고·손상

- 생활습관과 관련된 건강위험요인
- 질병과 의료이용

건강한 공동체 만들기란?

모든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총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웃들과의 신뢰, 상호협력 및 참여를 증진시키는 과정



커뮤니티 케어와 장애인 건강주치의

왜 아픈 사람이 병원에 찾아가야만 할까?

- 2000년 의약분업 파업: 의권(醫權)? 건강권?
- 경험적 인식: 건강문제의 80% 가량은 경제적 능력과 가족 요인에 의해 이미 결정
- 방문진료를 통해 느끼게 된 경험:
 - 환자 vs 의사? 집주인 vs 손님? 주민 vs 외부인? 질병 vs 빈곤? 약물치료 vs 사회적관계?
- 방문진료의 의미와 한계:



커뮤니티 케어란?

• 병원중심 돌봄체계

- 1) 병원에 환자가 찾아가기
- 2) 치료중심 의학
- 3) 분과중심의 전문성: 해체
- 4) 효율성: 부족한 의료자원
- 5) 지식독점과 위계질서



병원이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권력구조'임

커뮤니티 케어란?



• 지역사회중심 돌봄 체계

- 1) 아픈 사람 집에 찾아가기
- 2) 치료<돌봄, 환자<주민
- 3) 서비스 통합의 중요성
- 4) 비효율의 중요성(건강형평성)
- 5) 평등한 관계: 지식권력 해방

Medically Isolated Group (Kim & Jang, 2018)

우리나라 칩거노인: 60만명(전체 노인 10%)
중증장애인: 100만명(전체 장애인의 40%)

미충족 의료율: 약 25%



Home-Based Primary Care for Homebound Older Adults: Literature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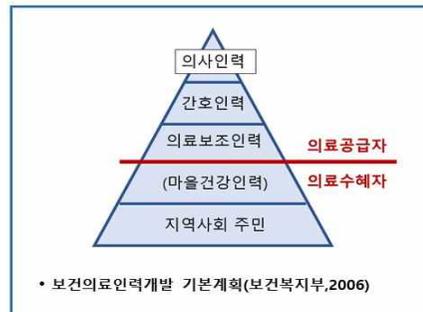
Chang-O Kim^{1*}, Seong-Hang Jang²
¹School of Aging Studies, Sungkyung University, Seoul, Korea
²Clinical Research Center, Yeung Hospital, Seoul, Korea
³Med Care Center of Research,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커뮤니티 케어란?



• 지역사회중심 돌봄체계

- 1) 아픈 사람 집에 찾아가기
- 2) 치료<돌봄, 환자<주민
- 3) 서비스 통합의 중요성
- 4) 비효율의 중요성(건강형평성)
- 5) 평등한 관계: 지식권력 해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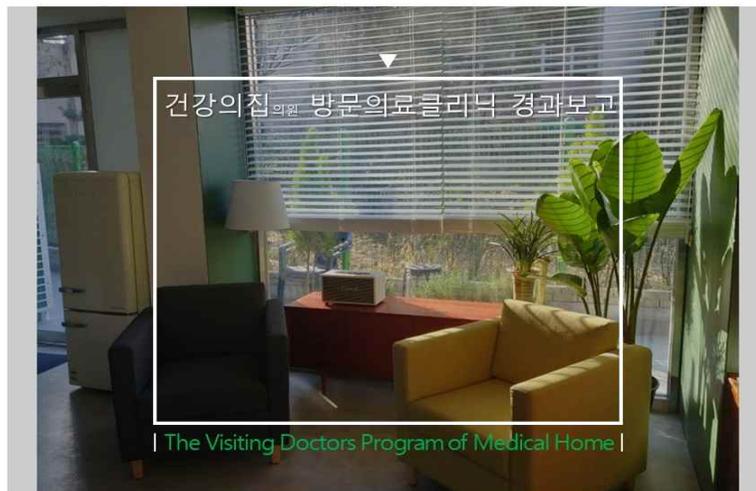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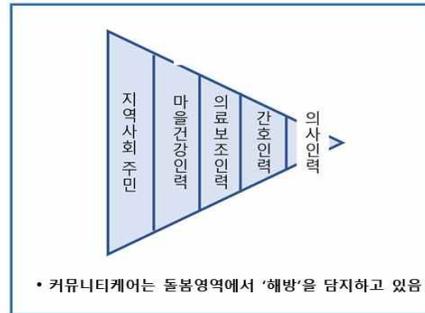


커뮤니티 케어란?

건강의집의원
방문의료클리닉

• 지역사회중심 돌봄체계

- 1) 아픈 사람 집에 찾아가기
- 2) 치료 < 돌봄, 환자 < 주민
- 3) 서비스 통합의 중요성
- 4) 비효율의 중요성(건강형평성)
- 5) 평등한 관계: **지식권력 해방**



방문진료의원 개설 및 운영과정

• 개설 전 준비과정 (2018.7~2019.2)

- 강북구 번동 339-1(의사2인, 간호사1인)
- *건강친화마을 만들기 사업(2012~)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2018.5)

“방문진료만 하는 의원을 한번 만들어보자”

- 1) 조직의 사명: 중증장애인과 치거노인의 건강권 증진
- 2) 법인형태: NGO, 연구소, 의료사협 << 개인의원
- 3) 경제성평가: 시물레이션(방문수가 75,660원)
- 4) 지역사회 수요조사: 방문진료희망 6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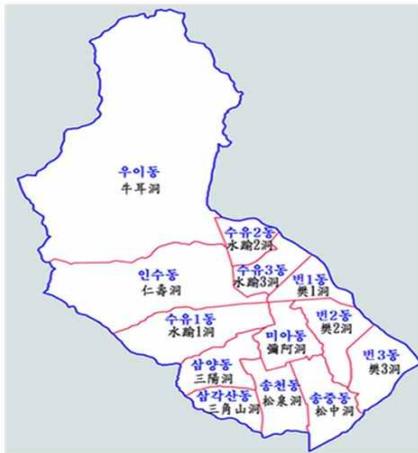


“좋은 의사 흉내내다 보니 동네 ‘닥터’이 됐어요”

[주요인] 오은-요조의 요즘은 / 찾아가는 의사 홍종원

www.h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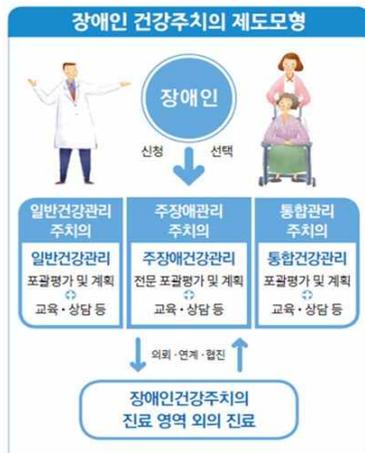
한겨레 신문 2019.9.21



| 강북구 | 인구 (명) | 장애인 (전체,명) | 중증장애인 (1~3급,명) |
|------------|----------------|---------------|----------------|
| 번1동 | 20,043 | 914 | 295 |
| 번2동 | 18,023 | 1,394 | 615 |
| 번3동 | 19,523 | 2,010 | 1,082 |
| 수유1동 | 22,552 | 1,296 | 532 |
| 수유2동 | 22,496 | 1,029 | 416 |
| 수유3동 | 24,266 | 1,113 | 386 |
| 삼양동 | 29,263 | 1,529 | 509 |
| 미아동 | 23,482 | 1,138 | 404 |
| 송중동 | 30,333 | 1,402 | 487 |
| 송천동 | 30,087 | 1,542 | 492 |
| 삼각산동 | 33,908 | 1,249 | 494 |
| 우이동 | 21,956 | 987 | 344 |
| 인수동 | 33,110 | 1,735 | 655 |
| 합계 | 329,042 | 17,338 | 6,711 |

• 장애인 건강권법 제정
(2015년 12월)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2018년 5월~)



|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용수 | 금액(원) | |
|--------------|--------|--|--------------------|----------|--------|
| 장애인 건강관리료 | IA601 | 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1) 일반건강관리 (가) 의원 (나) 종합병원 | 1,000.86 | 85,540 | |
| | IA611 | (가) 의원 | 1,000.86 | 85,540 | |
| | IA612 | (나) 종합병원 | 1,803.81 | 85,540 | |
| | IA630 | 다.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건강관리에서 포괄관리로 변경된 경우에는 연543원을 신청한다. (가) 의원 | 1,578.29 | 128,310 | |
| | IA621 | 나. 교육·상담료 (1) 일반의원 (가) 의원 | 130.47 | 10,620 | |
| | IA631 | (가) 의원 | 130.47 | 10,620 | |
| | IA641 | (2) 진료의원 (가) 의원 | 130.47 | 10,620 | |
| | IA651 | (3) 장애인 (가) 의원 | 130.47 | 10,620 | |
| | IA652 | (나) 병원, 종합병원 | 144.49 | 10,620 | |
| | IA661 | 나. 전화상담료 (가) 의원 | 95.09 | 7,740 | |
| | 의·발문료 | IA671 | (1) 발문인료 (가) 의원 | 907.25 | 73,850 |
| | | IA672 | (나) 병원, 종합병원 | 1,004.76 | 73,850 |
| | 의·방문인료 | IA681 | (가) 의원 | 644.10 | 52,430 |
| | | IA682 | (나) 병원, 종합병원 | 713.33 | 52,430 |
| | - | 아. 진료회비·연계료 | - | - | |

















Purpose 어떠한 목적과 원칙을 갖고 있는가? 건강의집의원

방문 의료 클리닉

• HBPC 목적

- 1) 의료접근성 증진
- 2) 통합적이고 연속적 의료서비스 제공
- 3) 진료과정에서 자기선택에 대한 존중
- 4) 응급의료, 불필요한 입원 등 보건의료비 감소

• 건강의 집 의원 운영 원칙

- 1) 방문진료만 실시함(외래 운영하지 않음)
- 2)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 진료(교통비 받지 않음)
- 3) 1회 방문당 30~1시간 충분한 진료시간
- 4) 주4일 근로(근로외 시간 자율적 활동)



진정한 치료는 '약'이 아니라 '관계'에서 비롯됨
(doctor-patient relationship)

Patients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건강의집의원

방문 의료 클리닉

• HBPC 대상

- 1) 중증 장애인
- 2) 허약 또는 칩거노인
- 3) 임종환자
- 4) 돌봄을 제공하는 환자가족 및 보호자

• 건강의 집 의원 방문진료대상자

- 1) 중증 장애인: 73명 (67.6%)
- 2) 장기요양등급자 또는 기타요청: 24명 (22.2%)
- 3) 임종환자: 2명 (1.9%)
- 4) 돌봄제공 환자가족: 9명 (8.3%)

<표 2> 국외 주요연구에서 칩거노인의 유병률

| | 일본 | 스페인 | 이스라엘 | 미국 |
|---------|-----------------|-----------------------|-------------------------|-----------------------------------|
| 연구자, 연도 | Umegaki 등, 2015 | Hegron-Bianco 등, 2016 | Cohen-Mansfield 등, 2012 | Ganguli 등, 1998; Ornstein 등, 2015 |
| 조사지역 | 도시 | 농촌 | 도시 | 농촌 |
| 조사인구(명) | 3,444 | 1,622 | 1,029 | 원곡(메디케어) 7,609 공인 7,609 |
| 유병률(%) | 14.4 | 9.2 | 17.7-19.5 | 왕정침거: 1.1 침거: 5.6 |

<표 3> 우리나라에서 칩거노인 유병률 추산

| | 원격화 가능성에 노인 | 취약노인 | 고령노인 |
|------------|-----------------------------|--------------------|---------------------|
| 해당 노인인구 수 | 57만명 ¹⁾ | 60만명 ²⁾ | 130만명 ³⁾ |
| 가중치 | 0.9 | 0.5 | 0.33 |
| 유형별 칩거노인 수 | 51만명 | 30만명 | 44만명 |
| 칩거노인 수 | 124만명 | | |
| 칩거노인 유병률 | 17.7(%) = (125만명/700만명)×100 | | |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안정자료: 생활자 수(국민연금보험공단, 2017.9)
2) Fried (Crimera)의 파혼 취약노인 유병률 0.3% 적용(2009년 노인실태조사)
3) 지난 한 달 동안 아무런 장기요양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자 비율 10.9% 적용(2009년 노인실태조사)

People 어떠한 사람들이 참여하는가?



• HBPC 인력

- 1) 의사
- 2) 간호사
- 3) 의료보조인력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등)
- 4) 사회복지사
- 5) 행정보조인력
(서비스 코디네이터, 행정관리자 등)
- 6) 자원봉사자



Process 서비스는 어떠한 흐름으로 제공되는가?

• HBPC 서비스

- 1) 스크리닝 및 등록관리
- 2) 포괄적 기능평가(CGA)
- 3) 가정방문 및 돌봄 계획 수립
- 4) 다학제적 팀 사례회의
- 5) 24시간 응급 콜 상담
- 6) 지역사회 연계 및 조정

방문진료 요구도 평가도구

침거, 고립, 고갈, 노쇠, 의료비지출, 다약복용, 미충족의료, 대리처방, 의료이용 만족도, 소득수준, 지리적 위치

<표 8> 방문진료 요구도 평가도구(5점 이상 우선대상자, 10점이상 최우선대상자)

| 구분 | 예 | 아니요 |
|---|---|-----|
| 1. 외출을 거의 못한다 (2시간 이하) | 3 | 0 |
| 2.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 없다 (종교단체, 복지관 등) | 1 | 0 |
| 3. 나는 보통 일이 힘들게 느껴진다 | 1 | 0 |
| 4. 약력이 남성 24kg 이하 또는 여성 19kg 이하로 측정되었다 | 1 | 0 |
| 5. 최근 1년, 입원 또는 응급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 | 3 | 0 |
| 6. 현재 10가지 이상의 약을 먹고 있다 | 1 | 0 |
| 7. 최근 1년, 약한데 병원에 가지 못하고 상담만 했어 있다 | 3 | 0 |
| 8. 최근 1년, 다른 사람이 나 대신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준 적이 있다 | 1 | 0 |
| 9. 현재 다사로 있는 중대위험이 만성질환자 중 하나다 | 1 | 0 |
| 10. 나는 의료급여(2종) 또는 최상의 건강보험자이다 | 1 | 0 |
| 11. 나는 강북구 변동에 살고 있다 | 1 | 0 |
| 합계 | | 점 |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 의료법 제 33조, 시행규칙 제24조 의거, 가정간호사를 2인 이상 확보한 의료기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정전문 간호사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자에 대하여만 실시
- 조기퇴원 환자, 만성질환자, 산모 및 신생아, 뇌혈관질환자, 기타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원대체 서비스이며 재원일수 단축 및 병상회전율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 요양병원이 급증하고 병상공급 과잉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추세
- 가정전문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기본간호, 투약 및 주사, 치료적 간호, 검사관련 업무, 교육 및 훈련, 상담, 의뢰 등의 간호를 제공하며 건강보험 재원으로 운영 (처방전은 90일 유효)
- 노인, 만성 질환자 증가와 의료비 상승 재입원, 장기입원, 시설입소의 고리를 완충하고 환자의 가정으로 서비스를 전환시키는 역할을 일정부분 수행, 의료비 절감과 치료의 연속성, 효율적인 만성 질환의 관리 기대
- 가정전문간호사는 6,338명(2013년)이며, 이중 활동 간호사는 6.7% 수준이나 최근 자격증 취득자가 감소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인력공급 대책 필요



14

서울케어-건강돌봄 사업

(1) 추진방향

- 마을의사 등 건강돌봄팀 (10명 전후)에 의한 이용자 중심 포괄적 건강돌봄서비스 제공
- 보건지소 확충을 통한 만성질환 포괄케어 거점으로 활용



- 의사회, 약사회, 병의원 등 유관기관(단체) 협력 및 참여 활성화
- 사업의 조기 안착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40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Seoul Medical Center 공공의료팀



국립재활원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장애인을 건강하게,
장애인을 행복하게”

강북구 지역사회중심 재활협의체 (2019.7.18)



장기요양제도
활동보조인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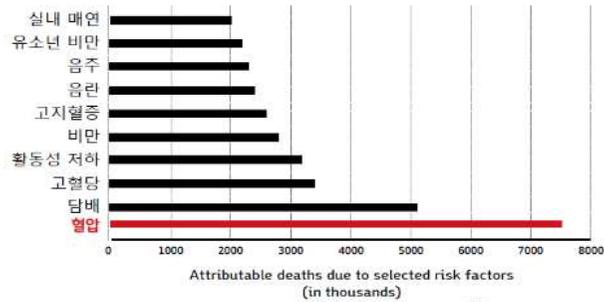


만성질환 관리 교육

방문의료클리닉 건강의집의원
대표원장 홍종원

고혈압의 위험

사망 위험 상위 인자 10개



Mendis et al. Global Atlas on Cardiovascula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2011, p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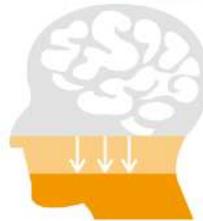
혈압을 낮추어야 하는 이유

평균 수축기혈압 2 mmHg 감소할 때마다

허혈성 심장병
위험 7% 감소



뇌졸중
위험 10% 감소



Meta-analysis of 63 prospective observational studies* 1 million adults, 12.7 million person-years
Lewington et al. Lancet 2002; 360: 1020-28

대한고혈압학회
The Korean Society of Hypertension

고혈압 치료의 효과(이득)

수축기 혈압
10 mmHg 낮추면

주요심혈관사건 20%
+
뇌졸중 27%
+
관상동맥질환 17%
+
심부전 28%
+
전체사망 13% 감소

수축기 혈압을 10~20 mmHg,
이완기 혈압을 5~10 mmHg 낮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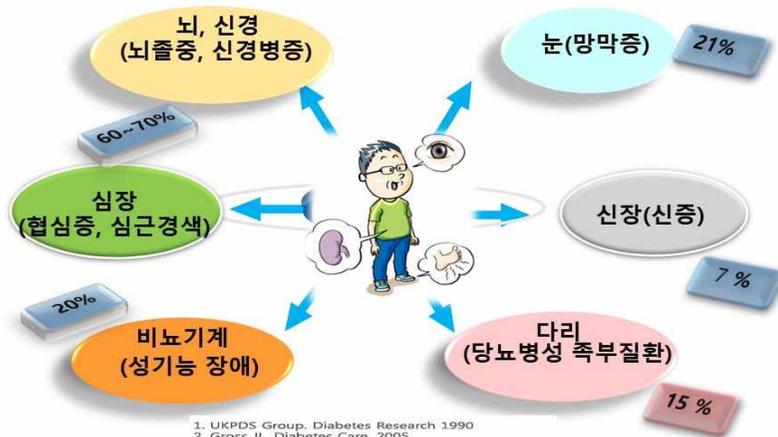
뇌졸중
30~40% 감소
+
허혈성 심질환
15~20% 감소

대한고혈압학회
The Korean Society of Hypertension

당뇨병 관리를 꼭 해야 하나요?



당뇨병 합병증



1. UKPDS Group, Diabetes Research 1990
 2. Gross JL, Diabetes Care, 2005
 3. Fong DS, Diabetes Care, 2004
 4. 대한당뇨병 학회 당뇨병성신경병증소위원회, 2007

합병증과 발생 요인



당뇨병 만성합병증의 종류

미세혈관 합병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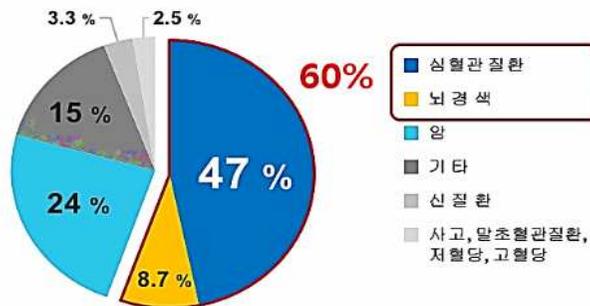
- 망막병증
- 신증
- 신경병증

대혈관 합병증

- 허혈성 심질환
- 뇌졸중
- 말초혈관질환

당뇨병은 왜 치료해야 할까요?

UKPDS 연구: 당뇨병 환자의 사망 원인
10-Year Follow-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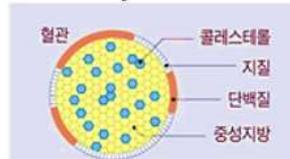
당뇨병 환자의 이상지혈증 관리

콜레스테롤



건강과 생존에 필수 물질
호르몬의 구성요소, 세포막 구조물질

Chylomicr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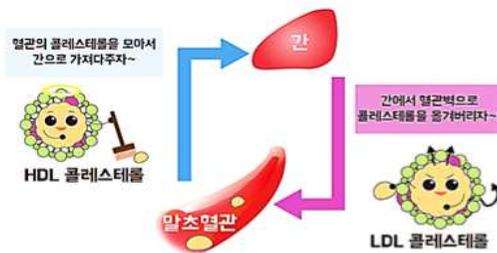
이상지혈증의 원인

제거불량

감상선기능저하,
폐경기, 노화

과잉생산

인슐린저항성
(당뇨, 비만)



이상지질혈증의 치료 (NCEPⅢ, 2001,2004)

1차 목표: LDL-C 감소

- 위험도 평가 : 당뇨병은 심혈관 질환과 동등
 고위험군: LDL-C < 100 mg/dL
 초 고위험군: LDL-C < 70 mg/dL

2차 목표: non-HDL-C < 130 mg/dL (LDL-C 이 목표에 도달 후 TG ≥ 200 mg/dL 이상일 때)

Expert Panel on Detection, Evaluation, and Treatment of High Blood Cholesterol in Adults. JAMA 2001;285:2486-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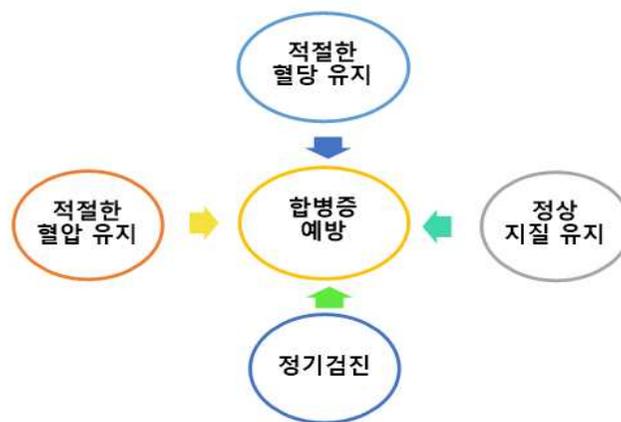
이상지질혈증 조절목표

• 당뇨병 진단 당시 및 매년 시행

| 지표 | 목표 |
|---------------|--------------------------------------|
| LDL 콜레스테롤 | < 100 mg/dL < 70 mg/dL (심혈관질환과거력) |
| 중성지방 | < 150 mg/dL |
| HDL 콜레스테롤 | > 40 mg/dL (남) > 50 mg/dL (여) |
| Non HDL 콜레스테롤 | < 130 mg/dL |
| Apo B | < 90 mg/dL |

당뇨병성 합병증 예방과 관리

당뇨병 합병증 예방



합병증 정기검진



당뇨병 관리



건강한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약물복용



정기적 점검

낙상예방과 응급상황 대처

방문의료클리닉 건강의집의원
대표원장 홍종원

낙상 예방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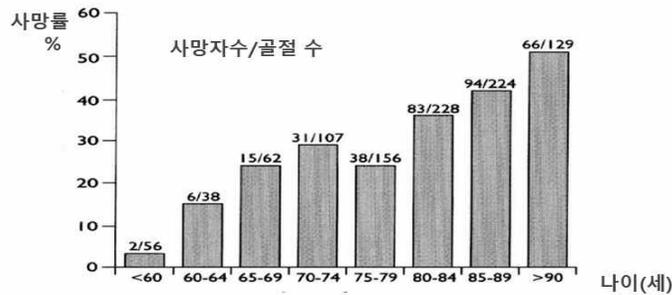
1. 낙상이란?
2. 낙상이 위험한 이유
3.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요령
4. 낙상 발생 시 대처법

‘낙상’이란?

- 보통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다치거나 또는 그로 인해 상처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 특별히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마비나 간질발작 혹은 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갑작스런 자세의 변화로 외부 물체에 부딪히거나 바닥에 닿는 예기치 못한 사건(Lamb 등, 2005)’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낙상이 위험한 이유?

골절로 인하여 사망률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50세 여성이 일생동안 대퇴골 골절로 사망할 확률은 유방암 위험도와 같은 정도로 중요합니다

- 고관절 골절: 2.8%
- 유방암: 2.8%
- 자궁내막암: 0.7%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요령

- 낙상 예방 요령
- 낙상 예방을 위한 의료진의 과제
- 낙상 예방을 위한 기구들

낙상은 이런 분들에게 잘 일어납니다

- 70세 이상 또는 15세 미만
- 뇌졸중, 관절염, 파킨슨병, 우울증, 치매, 시각 및 청각질환, 고혈압 등과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진 경우
- 약물의 복용 기간과 복용한 약물 : 진정제, 항정신성약물, 이뇨제, 항고혈압제 등
- 가동성이 저하되었거나 일상생활 수행 동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균형능력 저하가 있는 경우
- 특히 과거에 낙상 경험이 있는 경우라면 반복 위험성 높음

낙상 예방 요령 1

바닥이 미끄럽거나 여러 가지 물건들로 어지럽혀져 있을 때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 ➔ 물을 사용하는 싱크대 주변과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재료**나 **바닥장식**을 부착하여 미끄럽지 않도록 하고, 물이 엷질러진 경우에는 즉시 닦습니다.

낙상 예방 요령 2

계단을 오르내릴 때 안전 손잡이가 없으면 낙상의 위험성이 큼니다

- ➔ 계단 양쪽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건강한 팔로 손잡이를 잡고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고, 계단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용 재료**를 부착하며, 모서리를 표시하면 좋습니다.

낙상 예방 요령 3

집안의 조명이 너무 어두워 물건들이 잘 보이지 않으면 부딪히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 거실과 화장실, 계단 등의 **조명**을 밝게 합니다.

낙상 예방 요령 4

안정감이 없는 탁자를 짚고 일어설 때에도 탁자와 함께 넘어질 수 있습니다

➔ 일어날 때나 걸을 때는 무엇보다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보조손잡이를 잡고 일어나고, 바닥과 주변을 살피면서 보행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낙상 예방 요령 5

**침대나 소파의 손잡이가 없을 때 일어나는 것이
어려워 넘어질 수 있습니다**

- ➔ 침실, 거실, 욕실 등 실내에 쉽게 잡을 수 있는 부착용 **안전 손잡이**를 설치합니다.

낙상 예방 요령 6

**슬리퍼 또는 헐거운 신발은 벗겨지면서 넘어
질 수 있습니다**

- ➔ **발에 맞는 신발**을 신도록 합니다.
미끄러운 슬리퍼 신지 않기, **미끄럼 방지 양말** 착용하
기도 중요합니다.

낙상 예방 요령 7

문턱이 높으면 넘어갈 때 발이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 ➔ 문지방이나 현관문의 **턱**을 없애거나 **경사로**를 설치하여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7가지 외 의료진이 제공할 수 있는 것들

-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요인의 **예방활동**과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에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을 해야 하고, 낙상 위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골다공증 검사**를 받아서 적응증이 되면 치료하여야 합니다.
- 집의 구조나 계단, 욕실 바닥, 문턱 등 장애인을 위한 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으면 **전문가**를 안내하거나 **지원조직**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낙상예방에 도움을 주는 기구 - 지팡이(Cane)



낙상 발생 시 대처법

- 의식이 없다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 의식이 있다면 골절 여부와 통증, 출혈 부위를 확인합니다.
- 통증 및 부종, 멍든 부분이 발견되면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고 얼음주머니를 대줍니다.
- 심한 출혈이 있을 경우 이를 압박해 과다 출혈을 막고, 손상 부위를 심장 높이 보다 위로 거치시켜 출혈을 지연시킵니다.
- 심한 출혈, 심한 통증, 몸의 형태가 변한 곳이 없어도 **반드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관련 전문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삼킴장애 환자를 위한 교육자료

1. 삼킴장애(연하장애)란?

구강내의 음식물들이 효과적으로 위장관으로 전달되지 않거나 연하 경로 이외의 다른 경로 또는 구강 바깥으로 음식물이 이행되는 것으로 음식물을 위로 내려 보내지 못하는 것 즉, **음식을 씹고 삼키는 것이 어려운 것**을 말합니다

2. 삼킴장애 주요 증상



3. 삼킴장애로 인한 문제점

영양불량 및 탈수

- 음식물 섭취의 제한으로 영양불량 상태에 놓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체중감소, 면역력 저하, 상처 치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물 종류의 섭취가 제한되어 탈수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 탈수는 기력 및 인지기능 저하, 변비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흡인성 폐렴

- 삼키는 과정에서 음식물이 기관지로 잘못 들어가 폐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삼킴장애 환자의 흡인 예방법

삼킨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머리를 앞으로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긴 채 90°로 바르게 앉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4. 삼킴장애 환자를 위한 식사법

- ※ 소량씩 자주 먹는다(1일 5, 6회).
- ※ 가능한 상체는 최대한 세워서 음식을 섭취하도록 한다.
- ※ 음식물을 입안에 넣을 때는 마비가 안된 쪽으로 넣어 준다.
- ※ 단단한 음식은 아기 음식처럼 으깨거나 갈아서 먹인다.
- ※ 식사는 천천히 한다.
- ※ 삼킨 것을 확인하고 다음 수저를 드리도록 한다.



5. 식이변형

환자에게 알맞게 식이의 양, 횟수, 점도를 결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하곤란식이 1단계부터 시작하여 연하곤란 정도를 평가하며 차츰 단계를 높입니다.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 대상환자 | 구강섭취를 시작하였으나 맑은 음료를 삼킬 수 없다 | 씹기 쉬운 식품을 소량 드실 수 있고 삼킬 수 있다 | 부드러운 음식을 씹을 수 있고 액상 식품을 안전하게 삼킬 수 있다 |
| 음 기 | 푸딩 입안에서 흘러지지 않고 하나의 덩어리를 유지하도록 되직하게 조정하여 제공 | 꿀 또는 요플레 빨대로 마실 수는 없으나 입안에서 흘러지지 않으면서 약간 흐르는 정도로의 점도로 조정해서 제공 | 토마토 주스, 넥타 쉽게 흐르는 정도의 점도를 갖고 끈게 갈아서 체에 받힌 후 제공 요구르트, 쌀미음, 과일+우유 |
| 식 단 | 현죽(되직하게), 젤리, 푸딩, 으깬 감자, 갈은 고기 | 요플레, 주스+농후제, 크림스프, 으깬 바나나, 생선살, 커스타드 | 부드러운 토스트 등 |
| 물 | 물에 식품 농후제를 각 단계의 음기 점도에 맞게 혼합, 또는 얼음 절편을 삼키도록 한다. | | |
| 기 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씹을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쉽게 씹을 수 있는 음식 및 간식을 매끼 1-2가지 제공 • 음식 건더기 크기는 균일하게 • 너무 끈끈한 음식은 입안에 달라 붙어 잘 넘어가지 않는다 • 너무 잘게 썬 음식도 혀로 모으기가 힘들고 입안에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 • 딱딱한 음식이나 건조한 음식의 경우 입안에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 | |

6. 점도증진제의 사용

점도증진제란?

- 구강이나 인후에 음식물이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며, 기도 흡인의 위험을 방지합니다.
- 음식물의 점도를 원하는 만큼 조절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점도증진제 사용방법

1. 물이나 음료에 점도증진제를 서서히 첨가하면서 30초 동안 저어줍니다.
2. 혼합 후 액체에 점성이 생길 때까지 1분 정도 기다립니다.

* 약 복용 시: 점도가 증진된 물이나 음료에 가루약을 잘 섞어 복용합니다.



메디푸드 토로미 파워 스마일

뉴케어 토로미 퍼펙트

정식품 그린비어 연하 솔루션

케어젤 연하케어

7. 삼킴 근육의 근력강화 운동



8. 구강감각 자극 치료

구강 내에 찬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설압자에 거즈를 감고 물에 적신 후 냉동실에 얼려서 얼음 막대기를 만들어 사용하면 됩니다.

- 얼음 막대기를 입안으로 넣어 볼 안쪽을 쓸었다가 빼줍니다(양쪽 3번씩 반복).
- 혀 운동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라면, 얼음 막대기를 입안에 넣은 상태에서 혀를 사용하여 오른쪽->왼쪽, 왼쪽->오른쪽으로 막대기를 이동시키도록 합니다(30번 반복).

<그림 온도 촉각치료>





욕창의 예방과 관리

차례

1. 욕창이란 무엇일까요?
2. 욕창의 예방
3. 욕창 발생 시 대처법

욕창이란 무엇일까요?

- 욕창의 뜻
- 욕창의 증상
- 욕창이 잘 생기는 부위
- 욕창이 잘 생기는 상황

욕 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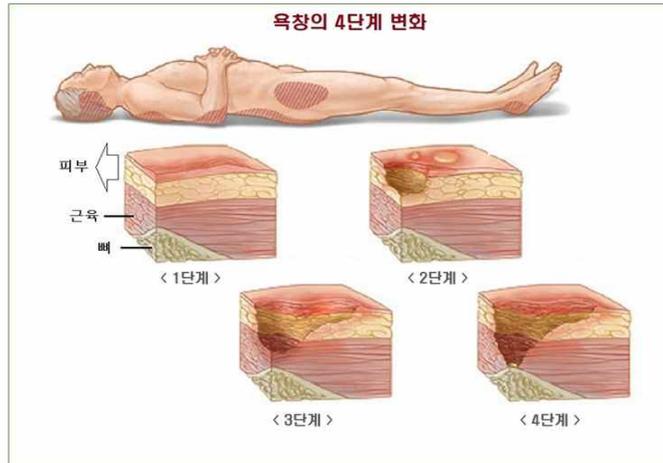
- 신체 한곳이 오래 눌리면서 피부가 빨강게 되거나 심하면 상처, 혹은 궤양으로 진행된 것을 '욕창'이라고 합니다.
- 신체의 일정한 부위에 압력이나 마찰 등의 물리력이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가해지면서 **모세혈관의 순환장애**를 가져와 피부와 피하 심부조직에 **괴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욕창의 증상

- 피부 발적, 수포, 짓무름, 궤양, 피부 및 피하조직과 근육괴사
- 심할 경우 패혈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중요한 질환임

욕창은 4단계로 진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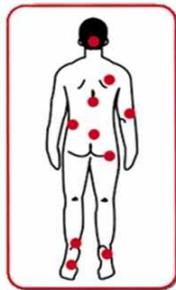
- 1단계 - 피부는 분홍색 또는 푸른색으로, 누르면 일시적으로 색깔이 없어지기도 함
 - 딱딱하고 열감이 있음
 - 마사지를 통하여 욕창 진행을 예방할 수 있음
- 2단계 - 피부가 짓무르고 진물이 남
 - 물집이 생기고 조직이 많이 상하게 됨
- 3단계 - 피하지방까지 깊은 피부 손상이 생기고 괴사 조직이 많이 발생
- 4단계 - 손상이 더 깊고 넓으며 근육과 뼈까지 괴사가 미침



욕창의 4단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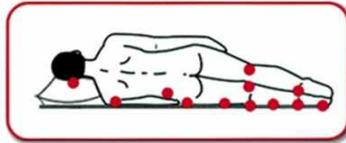
욕창이 잘 생기는 부위



<반듯이 누운 자세>

- 반듯이 누운 자세에서 : 뒷머리, 어깨, 팔꿈치, 엉치, 발꿈치 등
- 옆드려 누운 자세에서 : 가슴, 무릎, 발가락 등
- 비스듬히 누운 자세 : 위팔, 엉덩관절부위, 엉덩뼈능선, 발꿈치 등

※ 옆드려 누웠을 때 가해지는 압력이 다른 자세에서 보다 낮음



<비스듬히 누운 자세>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욕창이 잘 생깁니다

- 안 움직일 때 : 운동장애, 감각장애, 의식저하, 인지장애
- 영양 상태가 안 좋을 때
- 요실금 / 변실금
- 몸에 딱 끼는 옷을 입은 경우
- 비관적이고 의욕이 없을 때(움직임이 적기 때문)
- 대상자를 잘못 들어 올리거나 침대에서 잘못 잡아 끈 경우

욕창의 예방

- 욕창 예방을 위한 체크 항목

욕창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침대 시트 - 젖으면 바로 교체, 주름이 잡히거나 이물질이 없게 합니다.
- 체위 변경 - 적어도 2시간마다 변경, 의자에서는 더 자주 변경합니다.
- 피부 자극 - 피부를 너무 세게 자극하면서 주무르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 화상 주의 - 뜨거운 물 주머니 이용 시 화상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 쿠션 - 뼈 주위를 보호하고 무릎 사이에는 베개를 끼워 주도록 합니다.
- 압력 분산 - 압력을 분산할 수 있는 특수 매트리스와 베개 사용 권장합니다.
- 의복 - 몸에 꼭 낀 옷은 피하고, 단추가 달린 옷도 피합니다.
- 손톱 관리 - 손톱에 긁히지 않게 짧게 자릅니다.
- 균형 잡힌 식사 - 욕창의 예방과 회복에 영양성분이 중요합니다.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준비

- 침구: 요 또는 매트리스는 부드럽고 쿠션이 있는 게 좋습니다.
베개는 너무 높지 않게 합니다(15도 정도가 적당).
- 누워있는 자세: 마비된 어깨를 수평으로, 팔꿈치는 직각 가까이 굽히고 손은 가슴이나 배에 얹어서 높게 유지할 수 있도록 베개나 쿠션 등으로 받쳐줍니다.

관절 구축 예방을 위한 준비

- **손 관절 구축 방지:** 마비된 쪽의 손에는 타월을 둥글게 말아 쥐여 주고 손가락이 굽어지거나, 굳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방지(굴곡, 구축)합니다. 또는 마비 부위 손가락을 편 채 베개 밑에 놓아서 굽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 **무릎, 발 관절 구축 방지:** 발은 바깥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모래주머니나 모포를 단단하게 말아 마비된 쪽 발의 바깥쪽에 대줍니다. 무릎관절이 퍼진 채 굳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릎 밑에 얇은 베개를 받쳐서 무릎이 약간 굴곡된 상태로 있게 합니다.

체위 변경의 중요성

♠ 목적

- 고정된 자세로 인한 피부조직의 괴사와 욕창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혈액 순환 장애로 인해 몸이 붓거나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예방합니다.
- 관절강직으로 인한 움직임 제한이나 변형 방지를 합니다.
- 근육 위축으로 인한 호흡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회복시킵니다.

♠ 주의사항

- 대상자의 몸을 잡아야 할 경우 관절 밑부분을 지지해 주면 편안합니다.
- 체위에 따라 들어간 부분이나 다리 사이를 베개나 수건으로 지지해 주면 편안합니다.



독 바로

밤 12시 오후 2시
새벽 6시 오후 6시
아침 10시

오른쪽

새벽 4시
오후 12시
오후 8시

체위변경 시간

아침 8시
오후 4시
오후 10시

왼 쪽

욕창 예방을 위한 운동 및 마사지

- ♠ **운동** : 전신을 움직이는 것과 스트레칭은 혈액 순환을 도와 욕창을 예방합니다.
- ♠ **마사지** : 마사지는 근육을 이완시켜 주고, 피부에 분포하는 혈액의 순환을 도와 욕창을 예방하는데 좋은 효과를 가지며, 환자를 진정시켜서 편안하게 해줍니다. 목욕 후에는 항상 마사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마사지를 하면서 욕창이 의심되는 곳이 있는지 살핍니다.

욕창 예방을 위한 마사지

(1) 등 마사지

- 등 마사지를 할 때는 침상 머리 쪽으로 향하여 환자 가까이 서되, 발을 약 30cm정도 벌려서 편안한 자세를 유지합니다.
- 맨몸에 마사지를 하는 것은 자칫 환자의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등 마찰용 윤활제(로션 등)를 등에 골고루 바른 다음에 손바닥 전체를 등에 대고 부드럽게 문지릅니다.
- 특히 어깨, 엉덩이 부분과 같이 뼈가 돌출된 부위를 잘 마사지하여야 합니다.

(2) 배 마사지

- 배 마사지는 반듯이 누워 양 무릎을 세우게 하고, 양손을 포개어 마사지를 합니다.

(3) 팔, 다리 마사지

- 팔, 다리는 너무 세게 마사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특히 뼈 돌출 부위)

욕창 발생시 대처법

욕창의 초기 대처법

-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냅니다.
- 주위를 나선형을 그리듯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립니다.
-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킵니다.
- 습지 않을 때는 30분 정도 햇볕을 쬐니다.

욕창은 가족과 의료인이 함께 해결하는 것입니다

- 작은 피부 변화라도 주치의나 간호사에게 꼭 알려야 합니다.
- 1단계 욕창은 거의 회복이 되므로 초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 심한 욕창이라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 욕창이 생기면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청결에 주의합니다.

하지부종 예방 관리법

1. 하지부종 증상

하지부종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다 보면 종아리가 아프고 저리며 발바닥이 뜨겁고 수면 중에 쥐가 나기도 합니다.



2. 하지부종 예방을 위한 관리법

1) 발과 다리의 혈액 정체 피하기

- 1시간 이상 동일한 자세로 서 있거나 앉아있지 않기
- 쪼그려 앉거나 다리 교차하여 앉지 않기
- 팍 조이는 양말이나 스타킹, 신발은 피하기



2) 다리의 갑작스런 혈액 증가 피하기

너무 뜨거운 물에 다리를 담그거나 뜨거운 팩 적용 피하기



2. 하지부종 예방을 위한 관리법

3) 다리 올리기와 림프순환 운동

활동 후이나 잠자기 전에 다리를 심장 높이보다 위로 올려 놓고 휴식 취하기(약 15cm, 약 45도 각도, 약 30분 정도)



4) 하지 순환을 돕는 운동

운동은 1일 2회, 각각 5-10회 정도 반복합니다.

- **발목 구부리기:** 발목에 힘을 주어 몸 쪽으로 당겨서 5-10초 정도 유지, 다시 발목을 아래 방향으로 당겨서 5-10초 유지



4) 하지 순환을 돕는 운동

- **다리 눕히기:** 양쪽 다리를 모아 구부린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눕혀주고 다시 왼쪽으로 눕혀주는 동작 반복



- **무릎 구부리기:** 누워있는 자세에서 무릎을 구부려서 몸 쪽으로 당겨주기, 5초 정도 멈춘 자세를 유지한 후 다시 바닥으로 다리를 천천히 내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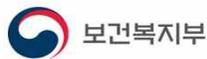


- **발목 돌려주기:**
앉은 자세에서 발목을 좌, 우로 천천히 돌려주기



뇌병변장애 교육자료

- 파킨슨병의 이상 운동



파킨슨병의 이상 운동 증상



파킨슨병의 이상 운동 증상

- 떨림 (진전)
 - 떨림이란 불수의적이며, 비교적 규칙적인 근육의 운동으로 발생하는 진동
 - 사지 원위부 근육에서 시작
 - 엄지와 둘째 손가락을 비비는 듯한 동작을 보임
 - 수의운동 시 일시적으로 사라졌다, 정지 시 다시 나타남

출처 :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

파킨슨병의 이상 운동 증상

- 느린 움직임 (서동)
 - 운동 완서(느린행동)
 - 운동 불능증
 - 얼굴표정 감소증
 - 발음 감소증
 - 글씨쓰기 장애

출처 :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

파킨슨병의 이상 운동 증상

- 근육의 경직 (강직)
 - 관절 운동 시 유연성이 없고 뻣뻣한 양상

출처 :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

파킨슨병의 이상 운동 증상

- 자세 이상
 - 몸 전체가 앞으로 굽어져 엉거 주춤한 자세
 - 반사 능력의 소실 - 낙상 시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음
 - 보행 장애
 - 첫 걸음 떼기가 어려움
 - 종종걸음
 - 멈추거나 방향 전환이 어려움

출처 :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

파킨슨병의 운동 치료

• 목운동하기

- 고개를 천천히 똑바로 펴 정면을 쳐다본다
- 가능한 머리를 뒤쪽으로 젖히고 다시 앞으로 움직인다
- 머리를 왼쪽,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려 양옆을 본다
- 다시 정면을 보고 귀가 어깨 쪽으로 향하도록 기울인다
- 상기 운동을 5-10회 반복한다



출처 :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

파킨슨병의 운동 치료

• 손 회복 운동하기

• 손목 회전 운동

- 양손을 천천히 회전 시킨다
- 속도를 천천히 올린다

• 주먹 쥐었다 펴기

- 엄지손가락을 4개의 손가락 아래에 쥐고, 주먹을 가능한 세게 친다
- 다시 주먹을 펴서 손가락을 뺀다

• 손힘 회복 운동

- 찰흙이나 치료용 접합제를 손에 쥐고 주무른다

• 상기 운동을 5-10회 반복한다

출처 :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



파킨슨병의 운동 치료

- 얼굴 근육 체조
 - 이마와 코를 찌푸린다
 - 입안에 공기를 넣어 세게 부풀린 후 천천히 뱉는다
 - 입술을 앞으로 뽕족하게 한 후 가능한 옆으로 벌린다
 - 아래턱을 내리고 다시 입을 다문다
 - 혀를 길게 앞으로 내었다 다시 집어 넣는다
 - 혀로 원을 그린다
 - 상기 운동을 5-10회 반복한다



출처 :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

파킨슨병의 운동 치료

- 맨손 체조 및 유산소 운동
 - 양팔을 리듬에 맞춰 앞뒤로 흔든다
 - 발꿈치 들어 올렸다 내린다
 - 수영, 리듬이나 주변 사람의 신호에 맞춰 걷기
 - 댄스
 - 앉아서 자전거 타기



출처 :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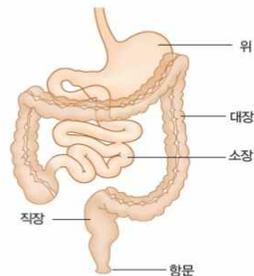
배변장애 관리

장애인건강관리



배변의 기전

- 배변운동은 척수반사만으로 가능
- 교감신경 (흉수-요수)
 - 연동운동을 느리게 함
 - 내부괄약근 수축, 변의 저장에 관여→ 손상 시 변비 유발
- 부교감신경 (천수)
 - 장운동을 증가, 괄약근 이완, 변의 배출 관여→ 손상 시 실변



출처: 척수장애, 이는 민균, 행복환 심, 교지출판사



배변장애

• 변비

- 장기간 누워있게 되는 마비 환자들의 경우 흔함
- 심하면 대변이 뭉쳐 직장을 막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 가장 흔한 원인은 배변 반사를 무시함으로써 생긴 불규칙한 장 습관
- 원인: 부적절한 식이 및 수분섭취, 활동제한, 질병, 스트레스 등

• 실변

- 수의적 배변은 자율신경계와 체성신경계에 의해 조절되나 운동과 감각 손상 시 수의적 장운동 소실
- 대뇌 통제와 항문괄약근 조절, 항문괄약근 감각이 손상받았을 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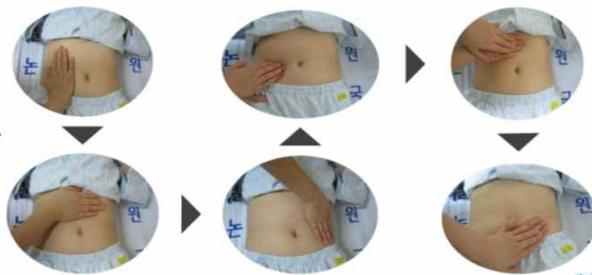
배변관리의 목표

-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길러주고 합병증 예방
- 실변으로 인한 피부손상 및 불편감 감소, 식욕증진, 정상적인 장기능 유지
- 사회생활의 유지
- 배변장애는 척수손상에서 흔하나 뇌 손상이나 신경 질환 장애인에게서도 발생함

일반적인 장 관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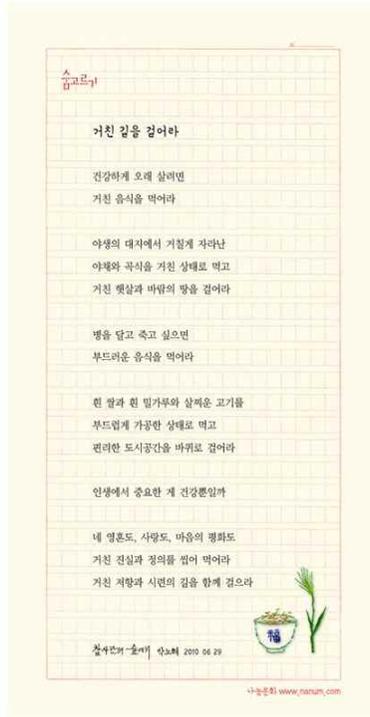
- SELF 원칙
 1. 규칙적인 배변습관 (Schedule)
 2. 운동 및 복부 마사지 (Exercise)
 3. 충분한 수분섭취 (Liquid)
 4. 풍부한 섬유질 섭취 (Food)

복부 마사지



출처: 배변장애 교육자료, 국립재활원

- 1) 누워서 무릎을 세운 뒤 손바닥을 30회 정도 비벼 따뜻하게 합니다.
- 2) 우측하복부에서 시계방향으로 부드럽게 문지릅니다.
- 3) 손을 포개어 오른쪽 아래->윗배->아랫배까지 눌러주면서 마사지합니다.



https://www.nanum.com/site/poet_sum/19659

나가며

- 건강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지 않다
 - 건강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
 - 물론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한다
 - 의료인은 건강 돌보는 좋은 동료이다
-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다
 - 건강하지 못하도록 한 사회 문제를 함께 바라보자
 - 건강을 결정하는 사회적 요인 찾아보기
- 나만의 건강이 아니라 함께 건강할 수 있도록 서로 돕자
 -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기

참고자료

- 대한고혈압학회(2019). 전문가용 고혈압 표준 교육 자료
- 대한간호협회(2017). 강사 보수교육 자료
- 정현중(2008). 광휘의 속삭임. 문학과지성사
- https://www.nanum.com/site/poet_sum/19659
- 건강의집의원 교육자료
- 파주 연세송내과 교육자료
- 보건복지부 국립의료원 장애인주치의 교육자료

http://www.shinyoungbok.pe.kr/index.php?mid=calligraphy&category=649&page=4&document_srl=725



감사합니다.

maeulclinic.com
maeulclinic@naver.com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제16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이해
및 옹호를 위한 지원방안]

- 4강 -

- 일 시 : 2022년 10월 27일 (목) 14:00~17:00
- 장 소 : 여의도 이룸센터 2층 소교육실
- 강 사 : 양숙미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이해 및 옹호를 위한 지원방안

양숙미(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2. 10. 27.

목 차

- 1 발달장애인의 특성 이해
- 2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이해
- 3 자기결정권 옹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4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옹호를 위한 서비스 지원
- 5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인권 피해 사례와 지원

I. 발달장애인의 특성 이해

1. 발달장애인의 특성

1) 정신적 장애 : 지적장애 정의

- 지적장애 : 지적장애인은 장애등급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개인이 처한 환경이나 학습지원 방법, 가족관계 등 지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장애인복지법 :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가 75 이하 이며 적응 행동에 결함을 지닌 자
- 미국 지적장애협회 : 지적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의 강도에 따라 구분 → 간헐적 지원, 제한적 지원, 장기적 지원, 심층적 지원

1. 발달장애인의 특성

2) 미국지적장애협회 장애판별기준: 적응행동기술

- 개념적 기술 : 수용 언어 및 표현 언어, 읽기와 쓰기, 금전 개념, 자기지시
- 사회적 기술 : 대인관계, 책임감, 자존감, 속기 쉬움, 순진함, 규칙 준수, 법준수, 희생피하기
- 실제적 기술 : 식사하기, 옷 입기, 용변 보기와 같은 일상생활 활동/식사준비, 약 복용, 전화사용, 금전관리, 대중교통수단 이용, 가사노동 등과 같은 일상생활 도구 다루는 활동/ 직업관련 기술/ 안전한 환경 유지하기 등

1. 발달장애인의 특성

3) 지적장애 특성 종합 : 일반적 특성+개인의 다양성 고려

- 성적 특성 : 이성을 만날 기회 제한적, 성에 대한 정보부족 및 잘못된 정보, 편견으로 인한 사회적 제약. 부모 및 시설관계자의 과잉보호 및 성 행동 무조건 금지 등으로 부적절한 성적 발달. 무성적 존재
- 인지적 특성 및 학업성취 : 추상적 개념 이해의 어려움. 모방학습 등의 부족, 일반화의 어려움.
- 언어의사소통 : 타인과의 관계형성 및 유지의 어려움.
- 사회정서적 특성 : 상호작용 방법을 몰라 친구사귀의 어려움. 부모나 형제, 또래 등으로부터 비난 받은 경험으로 누군가 관심을 보이면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친밀한 관계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고, 조절능력 부족으로 상대에게 집착하거나 쉽게 동화됨.

1. 발달장애인의 특성

4) 자폐성 장애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받은 후 최소한 6개월 이 경과 되어야 판정을 받음.
-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
- 언어발달이 일어나지 않거나 심각한 발달지연
- 상동 행동, 공격적 행동, 자해적인 행동 등 이상행동 나타남.

1. 발달장애인의 특성

5) 미국정신의학회 : DSM-4의 진단기준

-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적인 결함 : 비언어적 행동 사용의 결함, 또래 관계 형성의 어려움.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기쁨, 흥미, 성취를 나누지 못함. 사회 정서적 교류의 어려움.
- 의사소통 결함 : 언어발달 지체, 대화의 지속성 어려움. 반복적인 의미 없는 말, 발달수준에 적합하고 자발적인 가상 놀이, 사회적 모방 놀이 어려움.
- 제한되고 반복적이며 상동적인 행동, 관심, 활동 등 : 특정하고 불합리한 일상이나 의식에 집착, 상동적 행동, 물건의 일부분에 집착함. 고집스럽거나 지나치게 한 두 가지 제한된 면에 관심을 가짐.

1. 발달장애인의 특성

6) 자폐성 장애의 분류와 특성

- 자폐성 장애 :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현저하게 비정상적, 발달지체,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상동적 행동으로 학습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특별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람.
- 레트 장애 : 정상적인 출생 후 5개월 동안 정상적 발달을 하다가 그 이후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현저하게 제한되고 반복적이며 상동적인 행동, 관심, 활동 등으로 학습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특별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람.
- 아스퍼거 : 언어발달 지체는 없으나 사회적 상호작용이 현저하게 비정상적인 특징.
- 소아기붕괴성 : 출생 후 2년 동안 정상 발달이 이루어진 후 자폐증상
- 기타 전반적 발달장애

2.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이해

2.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이해

1) 자기결정권의 의미

- 헌법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
- 인격권 : 생명권, 초상권, 명예권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 휴식권, 문화 향유권, 자기운명 결정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책임의 원리 등이 나옴.

=> 자기결정권 :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중대 사항에 대해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격권, 행복추구권, 성적 자기결정권 등이 포함됨. 국가는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개입을 할 때 엄격한 정당화가 필요함. 또한 장애인 당사자도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자기 결정이 무엇인지, 그것을 타인이 정당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점검해야 함.

2.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이해

2) 자기결정권 관련 주요 국제사회의 노력

- 1948 세계인권선언
- 1971 지적장애인의 권리선언, 1975 장애인의 권리선언
- 1981 세계 장애인의 해 선포
- 1982 UN 장애인행동계획 : 발달장애, 정신장애, 치매 등을 포함한 장애인 전체의 인권을 위한 행동계획 수립 및 실천
- 2000 의사결정능력 장애 성인을 위한 헤이그 협약
- 2006 UN 장애인권리협약 : 의사결정능력상의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국제규범
- 2008 5월 3일 장애인권리협약 12조 : 장애인의 법적 능력 향유와 관련된 사항 규정
- 200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013 7월 1일 성년후견제도

=> 당사자 권리에 기반한 서비스 패러다임으로 변화

2.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이해

3) 장애와 자기결정권

-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개별적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이 있음. 최근에는 사회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강조하며 합리적 편의가 제공되어야 함.
- 기본적 권리로서 신체에 대한 결정권, 교육권, 노동권, 행복추구권, 자유권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 개선 필요함.
- 서비스 제공 인력의 태도와 인식 중요함.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때 서비스 이용환경을 고려해야 함.
-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권익, 사람중심, 자기주도, 권익 등의 주요 실천원칙을 강조해야 함.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 장애인 간 관계도 중요함.
- 지원의 효과성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차원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

2.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이해

4)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한 이유

- 자기결정 행동을 촉진하는 기술을 발달시킴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음.
 - 향상된 자기결정은 사회통합과 참여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됨.
 - 자기결정과정에서 자기 존중과 역량강화를 습득하고 충족시킬 수 있음.
 - 성인기에 달성해야 할 주요 과업인 자립생활을 실현시킬 수 있음.
- ⇒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이 아닌 발달장애인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수준 높은 자기결정권 행사가 보장될 수 있음.
- ⇒ 자기결정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민감성, 유연하고 합리적인 지원방식이 중요함.
- ⇒ 부모의 협조
- ⇒ 서비스 제공 기관의 운영철학이나 지향 가치: 소규모, 개별화 독립적인 생활 가능한 환경 조성

3.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옹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발달장애인자기결정권 옹호 영향요인

1) 서비스 제공과정의 자기결정 지원 과정

- 프로그램 기획 시 이용자가 참여결정
- 이용자가 서비스 참여, 변경 중단 등 최종결정
- 이용자가 이용 계약서 직접 결정
- 자기결정 개념 이해 교육 및 훈련 실시
- 자기결정을 위한 글이나 그림 정보 제공
- 일상생활의 자율적 선택과 결정 지원
- 자신의 선호, 강점, 단점을 알도록 지원
- 문제해결을 위해 타인과 합의할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평과 불만 의사표현 지원
- 서비스 이용평가에 참여
- 퇴소, 서비스 종료 후 삶 계획 결정

3. 발달장애인지기결정권 옹호 영향요인

2) 자기결정에 대한 실무자의 인식과 지식

- 이용자의 자기결정은 중요하고, 이용자는 자기결정 권리와 역량이 있음.
- 자기결정은 위험에 대한 감수와 당사자 책임을 포함함
- 이용자는 자기 욕구를 잘 알고 있고, 스스로 결정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실무자를 위한 자기결정 교육과 훈련 중요
- 실무자가 지식이 많을수록 자기결정 잘 지원함. 실무자가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함.
- 이용자의 자기결정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법 시도
- 이용자 특성에 적합한 자기결정 지원 가능
- 의사소통 기법을 많이 알고 있음.
- 이용자의 특성에 적합한 의사소통 기법 활용 가능

3. 발달장애인지기결정권 옹호 영향요인

3) 발달장애인 당사자 요인

- 이용자는 자기결정에 관심이 많고, 자기결정의 의미와 중요성 이해
- 이용자는 자기결정의 필요성을 알고 자신이 결정하는 것을 선호함
- 이용자는 자기결정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이해함
- 이용자는 자기결정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 참여함
- 이용자는 자기주장을 적극적으로 말하는 편

3. 발달장애인자기결정권 옹호 영향요인

4) 발달장애인 부모 요인

- 부모는 일반적인 자기결정 개념을 이해함.
- 부모는 자녀의 자기결정을 중시함
- 부모가 자녀의 자기결정 역량을 인정함
- 부모는 자녀의 자기결정 권리를 인정함
- 부모는 기관의 자기결정 지원 노력을 신뢰함
- 부모는 자녀의 자기결정을 지지함
- 부모는 자녀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지지함

3. 발달장애인자기결정권 옹호 영향요인

5) 서비스 제공기관 요인

- 기관의 원칙, 방침이 이용자의 자립 지향
- 기관은 장애패러다임 변화에 동의, 지지함
- 기관의 운영 철학이 이용자의 자기결정 중시
- 기관은 자기결정보다 이용자 보호와 안전 중시
- 기관에 이용자의 자기결정 지침 마련
- 자기결정 지원에 관한 수퍼 비전, 지원체계 마련
- 기관은 이용자에게 자기결정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 기관은 실무자에게 자기결정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 기관은 이용자에게 자기결정 기회를 정기적으로 제공함

3. 발달장애인지기결정권 옹호 영향요인

6) 사회문화적 요인

- 법률에서 이용자의 자기결정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음.
- 법률에 근거하여 이용자의 자기결정을 지원하고 있음.
- 법률에 자기결정 지원 방법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음.
- 이용자의 자기결정 수행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됨.
-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마련
- 사회가 이용자의 자기결정 의미를 잘 알고 있음
- 사회의 인식이 이용자의 자기결정을 중시하고 있음
- 지역사회에 이용자가 자기결정 할 여건이 마련됨.
- 사회가 이용자의 사회통합에 관심이 높은 편임

4.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옹호를 위한 서비스 지원

4. 자기결정 옹호 서비스 지원

1) 장애인권익옹호 서비스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 빈곤, 고립, 의존을 야기하는 장애화는 장애인이 폭력의 피해대상이 될 가능성을 높이고, 장애인이 범죄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호소의 어려움이 있음.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 보호 패러다임에서 권리 기반 패러다임으로 전환 필요성
- 복지서비스 확충과 서비스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인력수급과 직무 환경 조성 필요
- 학대의심사례 : 현장조사와 사례조사를 통해 학대사례, 피 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로 분류하여 최종 판정함
- 2019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체 신고 접수 및 학대 의심 사례 건수 결과, 장애인 학대피해자의 장애유형 중 지적장애인이 65.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4. 자기결정 옹호 서비스 지원

2)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 장애인 학대사례 지원 :
 -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조치.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피해 장애인의 피해회복지원
 - 장애인 학대의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 실시
 - 장애인 학대 사례 지원 내용의 기록 및 관리

4. 자기결정 옹호 서비스 지원

2)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
 -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 실시
 -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 피해 장애인 쉼터, 경찰, 지자체, 의료기관 등
 - 피해장애인의 피해회복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 법률구조공단, 지방변호사회, 법원, 검찰 등/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평생교육기관, 특수학교 등

4. 자기결정 옹호 서비스 지원

2)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
 - 장애인, 일반국민, 신고 의무자, 관련기관 종사자 등 대상 장애인 학대 예방교육
 - 장애인 학대신고전화 및 지역옹호기관 홍보
- 중앙옹호기관에 대한 보고 및 업무협력
 - 장애인 학대신고, 현장조사, 응급조치 현황 및 처리결과 보고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구성, 회의개최 현황 및 결과보고
 - 월별 실적 및 주요 활동(홍보, 교육) 보고
 - 사업계획서 공유
 - 기타 중앙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수행

4. 자기결정 옹호 서비스 지원

3)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 기본 및 심화교육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종사 인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36조의 9에 의거 사회복지사, 특수교육 교원, 임상 심리사, 정신건강 전문요원, 변호사에 해당하는 자격을 지니거나 그 외 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해당분야의 전문가여야 함.
- 장애인복지법 59조의 11에 중앙기관은 장애인 학대예방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능력개발을 규정하여 종사 인력에 대한 정기적 교육 훈련을 실시함.
- 기본 교육과 심화교육으로 구성함.
- 기본 교육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기본교육 및 역량강화 과정.
- 심화교육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역량강화 과정, 최고관리자 과정, 장애인 학대대응 전문가 과정으로 구성됨

4. 자기결정 옹호 서비스 지원

4) 장애인 권익옹호서비스의 역할

- 업무범위 명확화 : 장애인 학대 선별, 학대 대응서비스의 범위 규정,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 연계 및 자원확보
- 종사자 교육훈련 강화 : 기본교육, 보수교육, 수퍼 비전 등
- 교육내용 : 형사 절차나 사건 수사, 후견 제도 등

4. 자기결정 옹호 서비스 지원

5) 공공후견제도 : 성년후견제도와 의사결정 조력제도

- 이념
- 자기결정권 존중
- 정상화
- 잔존능력 존중
- 제도운용의 유연성 :
- 법정후견(신상후견)-의료처치 동의규정, 장기주거 및 기타 신상보호
- 임의후견(재산후견)-법률행위 지원 및 대행, 비법률행위 지원 및 대행

4. 자기결정 옹호 서비스 지원

5) 공공후견제도 : 성년후견제도와 의사결정 조력제도

- 개념
- 질병이나 장애, 노화 등으로 인해 재산 혹은 신상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의사결정이나 사무처리를 돕는 법적 지원 장치임.
-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후견을 제외한 성년자의 후견과 관련한 것으로 신상보호와 재산관리로 구분됨
- 개정민법에서 성년후견의 유형을 유지하면서 법원결정에 의해 행위 능력 제한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후견인의 권한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제도의 경직성과 획일성을 완화함(개정민법 제 9조, 제 10조)

4. 자기결정 옹호 서비스 지원

5) 공공후견제도 : 성년후견제도와 의사결정 조력제도

-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제도 개념 정의 총합
- 발달장애인의 잔존능력을 활용하고, 정상화와 자기결정권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
- 판단능력 결여로 재산관리, 신상 보호, 기타 법적 행위 및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후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사무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발달장애인 자신의 삶을 존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권리 및 복리를 지원하는 제도임
- 발달장애인은 착취, 학대, 방임 등 인권침해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공공후견제도가 발달장애인의 권리옹호제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음.
- 법률서비스와 제도구현과정에서 사회복지기능이 강조되어야 함.

4. 자기결정 옹호 서비스 지원

5) 공공후견제도 : 성년후견제도와 의사결정 조력제도

-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제도의 법적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근거하여 특정 후견을 중심으로 한 공공후견지원 사업 시행
- 권리옹호 서비스로 피 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의사결정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도모
- 주요 내용 :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후견심판청구 지원, 후견인 활동 지원 및 감독
- 사업대상 : 의사결정에 도움이 필요한 만 19세 이상 등록 발달장애인

4. 자기결정 옹호 서비스 지원

5) 공공후견제도 : 성년후견제도와 의사결정 조력제도

-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
- 자발적 의사결정 : 완전한 자기결정 형태
- 의사결정 대행 : 발달장애인은 정보와 지식의 유입이 어렵거나 의사결정에 따른 결과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타해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커서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의사 결정함
- 의사결정 지원 : 얼마만큼의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발달장애의 특성은 결정 능력 상실이 아니라 정보와 지식의 유입이 비장애인에 비해 다소 느린 점을 고려하여 정보와 지식을 제대로 유입하도록 지원, 그들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속도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함.

4. 자기결정 옹호 서비스 지원

5) 공공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와 의사결정 조력제도

- 성년후견제도의 유형
- 법정후견 :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 성년후견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 후견대상이 됨
- 한정후견 : 같은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 특정후견 : 같은 사유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개시되어 후견을 받음
- 임의후견 : 장차 후견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고 이를 위한 대리권 수여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에 의해 체결되는 계약에 의한 후견

4. 자기결정 옹호 서비스 지원

5) 공공후견제도 : 성년후견제도와 의사결정 조력제도

- 시사점
 - 중증장애인의 욕구를 위한 지역사회복지 내의 서비스 개발,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권익옹호 서비스 제공
 - 중증장애인을 핵심으로 한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 전문가의 협력으로 민관 공동 서비스 제공
 - 기존 사례관리와 달리 당사자에 의한 서비스 계획 수립과 서비스 제공의 후견적 지원제도 운영
 - 지역 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서비스와 환경구축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거버넌스적 서비스 제공

4. 자기결정 옹호 서비스 지원

5) 공공후견제도 : 성년후견제도와 의사결정 조력 제도

- 중요점
 - UN 장애인 권리 협약 제 12조 의사결정 대체 제도를 의사결정 지원 제도 변경할 것 요구함.
 -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조력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잘못되거나 조작되는 결정이 내려져 장애인 당사자에게 부당한 대우로 이용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함.
 -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개별 상황을 고려한 개별적인 서비스 계획 적용
 - 일본의 후견적 지원제도 :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제도 시행.
 - 지역 시민이 공공후견인 양성교육을 받아 후견직무 수행,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활동 수행
 - 당사자의 자기결정 가장 중시하고 발달장애인이 지역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함. 피후견인 안전망 조력자 역할 중시
 - 게이트 키퍼 : 고독사와 자살 방지를 위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운영

4. 자기결정 옹호 서비스 지원

5) 공공후견제도 : 성년후견제도와 의사결정 조력 제도

- 성공적인 지원서비스가 되기 위한 함의
- 지역주민과 지역 배경에 기반을 두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 서비스 개발 및 지자체와의 협력 하에 서비스 제공
- 네트워크의 중심은 사람이 되어야 함. 안심 키퍼, 서포터즈, 매니저, 팀장 기타 사람이 사람을 연결하는 구조로 이루어져야 함.
- 당사자 의견에 의해 서비스를 결정함. 장애인의 자기 결정과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함.
- 충분한 지원과 함께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개별화 서비스 계획 수립
- 중증장애인의 지역 내 자립을 위한 안전망, 생활 환경 망 등 자립생활 환경 조성.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마을 구성

4. 자기결정 옹호 서비스 지원

5) 공공후견제도 : 성년후견제도와 의사결정 조력 제도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과정의 쟁점과 딜레마
- 후견 활동의 질이 담보되는가 : 후견 활동의 제한된 만남, 후견 업무의 다양성에 따른 적절한 대응의 어려움.
- 후견활동에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만이 최선인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제한적인 상황 이해, 이해당사자의 의견 충돌과 관계 갈등, 모호한 의사결정 기준으로 자기결정권 보장과 최선의 이익간의 충돌
- 후견 활동의 경계 불분명. 표준화된 후견 활동의 경계 짓기 어려움. 후견인의 신체적, 정서적 소진
- 공공후견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능력 향상 기회가 있는지에 대한 쟁점
- 장애관련 기관의 연계와 협력의 제한성, 실효성 있는 후견감독체계의 필요성 논의

5. 인권피해 사례 및 지원

❖ 장애인 인권 피해

- 1순위 신체적 학대, 2순위 경제적 착취
- 재 피해 횡수 비장애인에 비해 높음
- 피해자와의 관계 : 가족, 친척, 지인, 기관 종사자 등 아는 사람이 78%~92%
- 피해뿐 아니라 가해의 형태로 나타남

5. 인권피해 사례 및 지원

1) 발달장애인 인권 피해 사례의 주제-성, 재산범죄사례

- 성범죄 : 생활 습관에 의한 에피소드 부터 강력범죄까지 다양
- 가해와 피해 모두 지원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 성범죄 사례
- 중재되지 못하면 범죄로 발전 가능한 작은 습관들
- 발달장애인 성폭력 재 피해와 후유증의 복잡성
-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성범죄 증가
- 목시적 위계가 작용하는 발달장애인 성범죄 가해
- 재산범죄 : 일상생활과 전 생애에 만연한 발달장애인 재산범죄
- 절도, 갈취, 교사 피해를 통해 범죄학습
- 명의도용과 대출사기에 이용되는 발달장애인
- 계약조건의 복잡함으로 빛이 되는 핸드폰과 렌탈 상품

5. 인권피해 사례 및 지원

2) 발달장애인의 성, 재산범죄 지원현황 : 범죄지원체제의 부재를 보완하는 다양한 노력

- 사회복지사의 역량에 따른 지원의 장단점
- 사회복지사의 역량에 따라 개별화된 지원제공
- 역량의존시스템으로 인한 사회복지사 소진
- 사례관리, 권익옹호와 범죄 지원방안의 혼재
- 범죄 지원체제로서 사례관리와 권익옹호
- 체제 보완을 위한 현장 중심의 방안 마련 노력

5. 인권피해 사례 및 지원

3) 예방적 접근

-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문제해결 중심의 성, 재산 교육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제공
- 발달장애인의 범죄 가해, 피해사례 및 실태조사 정례화
- 미국 : 장애인 범죄피해 인식 증진법 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 범죄피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사회적 인식 증진
- 범죄 회복 지원기관인 권익옹호기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등 연계하여 다양한 사례수집, 정리 등
- 범죄 지원체제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방안 마련
-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 발달장애 행동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증재하는 전략 개발, 긍정적 행동지원, 개인별 지원계획

“판사 아빠, 의사 엄마도 자폐는 감당이 벅했어요”

“판사 아빠, 의사 엄마도 자폐는 감당이 벅했어요” (naver.com) (출처 : 동아일보)

‘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를 쓴 돈반과 캐런 저커는 1988년 영화 ‘레인 맨’이 자폐증의 서사를 영원히 바꿨다고 평가한다. 감각이 너무 예민해 시끄러운 소음을 몹시 고통스러워하고, 지나칠 정도로 순진하고,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걸음걸이는 뻣뻣하고, 온갖 통계 숫자에 강박적으로 집착하고, 몸에 손을 대면 벌컥 화를 내며, 초조해지면 같은 말을 끝없이 되풀이하는 자폐증에 대해 조금은 이해하게 된다. 영화의 진짜 미덕은 결말에 있다. 동생 찰리와 함께 여행하면서 레이먼드는 조금씩 성장하지만 여전히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폐인이고, 24시간 돌봐주는 사람이 있는 시설로 돌아간다. 원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자폐란 항상, 언제까지나 존재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자폐를 치료의 대상이 아닌 타고난 다양성의 하나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17년 뒤 한국에서 자폐 가족의 현실을 그린 영화 ‘말아톤’(2005)이 나왔다. 진짜 자폐인 같은 조승우의 연기에 감탄하다 죽기 전에 아들에게 하나라도 더 살아갈 방법을 가르치려는 엄마(김미숙 분)의 헌신에 울먹이게 된다. 마라톤을 시작할 때마다 엄마가 아들을 응원하기 위해 “초원이 다리는?” 하고 물으면 “백만불짜리 다리”라고 답하는 장면이 오래도록 회자됐다. 김용직 변호사(67·법무법인 케이씨엘)는 2006년 1월 ‘말아톤2’의 탄생을 기다리며라는 칼럼에서 너무나 느리게 성장하는 자식을 지켜봐야 하는 부모의 처절한 심경을 토로했다.

⋮

“판사 아빠, 의사 엄마도 자폐는 감당이 벅했어요”



입력2022.08.21, 오전 10:02
(출처 : 동아일보)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립협회 회장 · 변호사

- “신을 원망했더니 평생 ‘업’을 주시더군요”
- ‘레인 맨’도 ‘우영우’도 아닌 우리 아이
- 말시절, 장애등급제 폐지? 명분은 좋지만...
- 장애 감수성 부족한 입법이 실패하는 이유
- 마지막 미션, 장애인특별수요선착제도

“판사 아빠, 의사 엄마도 자폐는 감당이 벅했어요”

‘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를 쓴 돈반과 캐런 저커는 1988년 영화 ‘레인 맨’이 자폐증의 서사를 영원히 바꿨다고 평가한다. 감각이 너무 예민해 시끄러운 소음을 몹시 고통스러워하고, 지나칠 정도로 순진하고,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걸음걸이는 뻣뻣하고, 온갖 통계 숫자에 강박적으로 집착하고, 몸에 손을 대면 벌컥 화를 내며, 초조해지면 같은 말을 끝없이 되풀이하는 자폐증에 대해 조금은 이해하게 된다. 영화의 진짜 미덕은 결말에 있다. 동생 찰리와 함께 여행하면서 레이먼드는 조금씩 성장하지만 여전히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폐인이고, 24시간 돌봐주는 사람이 있는 시설로 돌아간다. 원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자폐란 항상, 언제까지나 존재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자폐를 치료의 대상이 아닌 타고난 다양성의 하나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17년 뒤 한국에서 자폐 가족의 현실을 그린 영화 ‘말아톤’(2005)이 나왔다. 진짜 자폐인 같은 조승우의 연기에 감탄하다 죽기 전에 아들에게 하나라도 더 살아갈 방법을 가르치려는 엄마(김미숙 분)의 헌신에 울먹이게 된다. 마라톤을 시작할 때마다 엄마가 아들을 응원하기 위해 “초원이 다리는?” 하고 물으면 “백만불짜리 다리”라고 답하는 장면이 오래도록 회자됐다. 김용직 변호사(67·법무법인 케이씨엘)는 2006년 1월 ‘말아톤2’의 탄생을 기다리며라는 칼럼에서 너무나 느리게 성장하는 자식을 지켜봐야 하는 부모의 처절한 심경을 토로했다.

'우영우 신드롬' 마냥 기쁘지만 앓은 이유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자폐 변호사 우영우의 대형 로펌 생존기를 다룬다(왼쪽). 극 중 우영우는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같은 로펌의 비장애인 변호사들은 우영우와 함께 사건을 조사하거나 변론을 담당한다. [ENA])

“영화 ‘말아톤’의 영향으로 자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자폐가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정도의 장애라고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이상(異常)행동을 보면서 웃기에는 너무 처절하고 마음 아픈 내용의 장애다. 필자의 경우 23년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발전해 온 아들을 향해 ‘내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아는 것, 그것이 소원이다’라는 말을 해야 할 정도인 것이다.”

2022년 한국 사회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신드롬에 빠졌다. 한 번 보면 다 기억하는 천재 자폐인 변호사 이야기가 매회 시청률을 경신하자 “현실에서도 자폐 스펙트럼 변호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쏟아졌다. 그때마다 김 변호사는 “자폐를 가지면서 동시에 지능이 높고 실제로 변호사가 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지만, 사람들이 자폐 장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접근”이라고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좀 복잡한 심정”이라고 했다.

“저런 애가 현실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드라마를 보고 싶지 않다는 부모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려운 애들(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의 자폐인)은 방송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자폐인 권리 옹호의 대부(代父)로 불리는 김 변호사가 ‘우영우 신드롬’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기분'

김용직 변호사는 경기고-서울대 법대를 나와 1978년 제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동력자원부에서 사무관 생활을 하다 1980년 다시 사법시험에 도전해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연수원 12기) 시절 아내(성인영 울산대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명예교수·재활의학)를 만나 1982년 결혼해 이듬해 7월 첫아이를 얻었다. 1985년 서울동부지법 판사로 임관할 때까지 그의 삶은 의도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해 천사의 미소를 지닌 아들 범중 군이 자폐 진단을 받았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지만 그때만큼은 하느님을 원망했다.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음성 꽃동네의 오용진 신부를 찾아가기도 했다. 그때 오신부가 “다른 분들보다 여건이 좋으니 자폐성 장애인들을 위한 일을 해보시라”고 한 말이 평생 업이 될 줄은 몰랐다.

“1980년대만 해도 집안에 자폐아가 있으면 쉬쉬하고 밖으로 나오질 않았어요. 우리 아이가 자폐 판정을 받고 보니 주변에 비슷한 처지의 가족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같은 아픔을 지닌 사람들끼리 얼음얼음 모여 자폐아부모회를 결성했고 몇 천만 원씩 각출해 최초로 발달장애인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었죠.”

판사 아내, 의사 엄마에게도 자폐는 용어부터 생소하고 감당하기 벅찬 장애였다. 아들의 교육과 치료를 위해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남들이 겪는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는 다 거쳤다. 특수학교를 졸업한 아들이 갈 곳이 없었을 때에는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기분이었다. 자폐 자녀를 끝까지 돌보려면 돈과 시간이 필요했다. 2001년 8월 법률을 벗고 법무법인 케이씨엘의 공동대표가 됐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폐인을 대변하다

2006년 1월 12일 서울 강남의 밀알학교 강당에서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창립대회가 열렸다. 김 변호사는 자폐성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을 주축으로 의사와 교육·치료 및 복지 전문가를 모으고, 기업인과 독지가를 만나 후원과 참여를 권유해 협회를 출범시켰다. 부모들이 자식을 자립시키고 편히 눈감을 수 있도록 사랑협회가 맡음을 놓겠다는 다짐은 소박하지만 절박한 목표였다.

“장애인들이 거리 시위에 나서기도 하지만 자폐성 장애인과 가족들에겐 그조차 쉽지 않아요. 자폐인은 대부분 스스로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고, 부모들은 그런 자식을 두고 밖으로 나갈 여유가 없어요. 이들을 대변해 줄 누군가가 필요했죠.”

제일 먼저 추진한 일이 발달장애인법 제정이었다. 애초 자폐성 장애인만을 위한 입법을 추진했지만 지적 장애인을 포함한 발달장애인법이 됐다. 외국 입법 사례와 제도를 참조하면서 발달장애인들과 그 가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 개인별 사례관리를 위한 지원센터, 교육 및 직업재활시설,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까지 아우르는 법안을 만들고 법제정추진연대를 결성해 시위와 삭발 투쟁을 불사했지만 법안은 번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다 2014년 ‘염건도에’ 사건이 또다시 터지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는 데 발달장애인법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김 변호사의 주장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2014년 5월 20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2021년 국내 전체 등록장애인 수는 260만 명, 그중 자폐성 장애인은 3만4000명이다. 2012년 1만7000명인 것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자폐성 장애인 수는 두 배로 늘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1000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것을 적용하면 국내 자폐성 장애인 수는 5만 명 가까이 될 것으로 추산한다.

“애초 장애인복지법과 별개로 발달장애인법을 만든 취지가 중증의 자폐성 장애인을 위해서였는데 만들어놓고 보니 정작 ‘아주 어려운’ 아이들은 또다시 소외되는 것이 매우 아쉬운 점이지요. 그래서 ‘우영우 신드롬’을 보는 제 마음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법과 제도보다 ‘장애 감수성’ 먼저

김 변호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탈시설’이나 이미 형식상 시행되고 있는 ‘장애등급제 폐지’도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식을 사실에 넣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사실에 남아 있는 80~90%가 발달장애인이예요. 가족이 돌보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거기 있는 것인데 사실을 다 없애버리면 그들은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부모가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를 보셨어요. 대부분 시설이 아니라 집에서 데리고 있다 떨어진 일입니다. 인권침해가 문제라면 시설 폐쇄가 아니라 운영진을 바꿔야죠. 처음부터 ‘탈시설’이 아니라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잘 살아가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했어야죠. 장애등급제이란 것도 당사자들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장애가 무슨 평가 대상이냐고. 모든 장애인에게 개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등급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고 어려운 장애일수록 더 보호해 줘야 하기에 등급이 필요한 겁니다. 등급제 없애고 중증, 경증으로만 나누다 보니 과거 1~3급이 다 같은 중증이 됐어요. 장애인고용법에서 중증 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럼 누가 최중증인 1급을 고용하겠어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3급을 고용하지. 장애등급제 폐지로 최중증 장애인들이 더 손해 보는 구도가 된 거죠. 지자체에는 혼자 옷을 입을 수 있느냐 없느냐 등 외형적으로 인식 가능한 요소가 판정의 기준이 되지만 자폐성장애인은 외형적으로는 잘 알아볼 수 없는 데, 자폐성장애인이 혼자 옷을 입을 수 있다고 경증이 될까요. 그만큼 판정하기 어렵고,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40년 가까이 자폐인 권리옹호 운동을 해오면서 김 변호사는 법과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장애 감수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반적인 근로지원인 제도 외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추어 그들의 취업을 위해 일터에서 그들을 돕는 발달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으로 한정하다 보니, 최저임금은 커녕 월 50만 원을 받더라도 일할 곳이 필요한 다수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고용노동부로서 일반적인 근로자의 개념도 중요하겠지만 발달장애인의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장애 감수성이 부족하면 이렇듯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모든 새로운 제도에 쿼터제를 도입해 최중증에 10%, 30% 할당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픈 손가락 위한 마지막 선택

김 변호사 부부는 큰아이가 태어나고 5년 뒤 둘째 딸을 낳았다. 다시 6년 뒤 셋째 아들을 낳았다. 다복하고 단란한 살남배지만 형제 간 티끌이 많이 지는 데는 사연이 있다. 언젠가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형제들이 큰아이를 돌봐야 할 텐데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고 생각했다. 큰아이에게 진중하느라 상대적으로 신경을 써주지 못한 둘째, 셋째에게 미안하지만 그들도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에게 '아픈 손가락'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해 줄 거라고 믿는다.

김 변호사가 한국자폐인사랑협회를 설립한 지 17년째. 부모는 칠순을 향해 가고 범중 씨는 미혼을 바라본다. 부모의 마지막 소원은 '사후'에도 장애인 자녀가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 변호사는 성년후견 제도에 그 역할을 기대했으나 한계가 드러났다. 무엇보다 발달장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후견인이 재산을 처분하는 등 약 용될 소지가 있었다.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장애인특별수요신탁제도다.

“쉽게 말해 부모가 얼마간의 돈을 신탁에 넣고 장애인 자녀를 위해 어떻게 쓰라고 지정해 놓는 제도죠. 세세하게 계약 내용을 지정할 수 있어 맞춤형이 될 수 있고, 또 신탁의 특성상 수탁자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방법에서는 증여세를 물어야 하고, 재산이 생기니까 당사자는 장애연금을 받지 못해요. 신탁제도 도입과 동시에 장애인연금법, 증여세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장애인특별수요신탁의 기본 개념은 부모가 장애 자녀 앞으로 사회가 할약한 일정 금액을 공적기관에 맡기면 국민연금처럼 기금을 운용하는 대신 증여세는 면제해 주고 신탁 금액과 별도로 장애연금은 계속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픈 손가락 위한 마지막 선택

김 변호사는 아산사회복지재단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하면서 보건복지부, 서울시 담당직원을 당면적 위원으로 하는 신탁관리위원회를 꾸리고 연금·신탁·민법 분야 전문가들을 모아 연구와 토론을 거듭하여 신탁제도의 일정을 완성해 가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저만 보면 장애인특별수요신탁 법안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봐요.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많지만 뚜렷한 입법 진전이 없으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동력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발달장애인법도 도입하기까지 거의 10년이 걸렸으니 무군을 모아 다시 해봐야죠.”

지금까지 김 변호사가 견어온 길을 보면 돈 되는 일보다 돈 쓰는 일, 명예라기보다 봉사인 경우가 많았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 맡고도 사회복지법인 아가페 이사, 성남도복지관 운영위원장, 소외장학재단 상임이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부회장, 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 각종 공익단체 임원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올해 뜻하지 않은 중책을 하나 더 맡았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미래재단 이사장.

“어느 날 윤석진 원장이 찾아왔어요. KIST 직원들이 2012년부터 연봉의 1%씩 모아 마련한 15억 원가량의 기금을 바탕으로 KIST미래재단을 만들어 인류 공동의 난제인 치매와 자폐를 해결할 도전적 연구 수행을 위해 인적, 물적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니 재단 이사장을 맡아달라는 겁니다. 도대체 나를 어떻게 알고 왔느냐고 물었죠. 10년 전 해외 학회에 가다 오티즘을 다룬 ‘타임지 커버스토리(지폐증을 들여다보다 -미국에만 100만 명 이상의 자폐인이 있으며 새로운 증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를 보고 오티즘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됐고, 한국에도 사랑협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꾸준히 추적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학의 진정한 의미가 나눔에 있다고 하면서 가장 어렵고 정복되지 않은 분야의 연구를 통해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원조를 받던 우리가 해외 원조도 하는 등 감동적인 부분이 있어서 수락하고 맡았습니다.”

사랑이라는 두 글자로 할 수 있는 일

돌이켜 보면 김용직 인생에는 세 가지 만남이 있었다. 첫 번째 그에게 공익과 나눔의 삶을 보여준 어머니 박옥서(1928~2005) 여사. 어머니는 사회복지에 힘쓴 공로로 1969년 어버이날 보건사회부 장관 표창장을 받았다. 어머니의 여동생 박영옥(91) 사회복지법인 아가페(무료 양로원과 전문요양원 운영) 이사장도 평생 독신으로 살며 사회복지에 헌신했고, 소화장학재단을 함께 이끌어 매년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 70여 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두 번째가 아내 성인영 교수와 아들 범중 씨와의 만남이다. 범중이가 자폐아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오로지 판사의 길”만 생각했던 그가 “오로지 아들을 위한 삶”으로 궤도수정을 할 수 있었을까. 아내와 함께 부부가 합심해서 내 아이를 위해 시작한 일이 어느새 자폐성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대변하는 일이 된 것도 운명이었다. 마지막은 사회복지에 눈을 뜨게 해준 고 서경수 신부님과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길로 뛰어들게 한 오용진 신부님 및 어머니와 아들을 통해 인연을 맺은 수많은 사람과의 만남이다. 세 만남을 통해 프란체스코 성인의 기도처럼 ‘주의 도구로 사용되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

그는 한국자폐인사랑협회를 만들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고집했다. 상남매를 데리고 훗카이도 가족여행을 떠났다. 사랑이 지닌 자유의 힘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범중 군은 흥분하면 뛰다니며 자해를 했다. 간신히 진정시켜 비행기에 탑승하고도 조마조마한 상태가 계속됐다. 괜히 큰애를 데리고 왔다는 후회가 밀려들었다. 버스로 이동 중에도 수시로 ‘주의 기도’를 암송하며 범중을 다독여야 했다. 얼친 데 닿친 격으로 버스를 바꿔 타는 과정에서 짐이 분실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부주의하게 일처리를 한 여행 가이드에게 인성을 놓이는 순간 당당히 흥분한 아들이 제어 불능 상태가 됐다. 아들을 진정 시키다 녹초가 된 가족이 닦우치는 마음으로 사랑에 대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때 기적처럼 범중이가 싱글벙글 웃는 것이 아닌가.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신이 이 아이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힘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김 변호사는 협회를 창립하면서 원인조차 알 수 없는 자폐성 장애를 극복하는 힘은 진정한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 속에 살아가는 자폐인들은 그들 특유의 맑음과 진정성으로 매달려가는 현대사회에 산소와도 같은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준다는 것도 말하고 싶었다. 사랑이라는 두 글자는 이렇게 17년째 ‘자폐인’과 ‘협회’ 사이에 굳건히 자리하고 있다.

김현미 기자 khmzip@donga.com (출처 : 동아일보)

Thank You !

제16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장애인의 정치참여와
새 정부 장애인 정책의 방향]

- 5강 -

- 일 시 : 2022년 10월 31일 (월) 14:00~17:00
- 장 소 : 여의도 이룸센터 2층 소교육실
- 강 사 : 조한진 [대구대학교 대학원 장애학과 교수]





장애인의 정치참여와 새 정부 장애인 정책의 방향

조한진(대구대학교 대학원 장애학과)

1. 서론

장애인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먼저 선거에서 장애인으로서 의회에 진출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제21대 국회에 더불어민주당의 최혜영 의원, 국민의힘의 김예지·이종성 의원 등 3명이 입성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도 2018년에 광역·기초의회에 42명, 광역·기초단체장에 2명의 장애인이 당선된 바도 있다.

이렇게 장애인 대표를 의회에 진출시킨 배경에는 전 장애계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열망과 노력이 밑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직접적 정치참여는 미미한 수준이며, 따라서 당분간 비례대표 후보자의 최소한 10%를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과 같은, 장애인의 정치 진출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과연 누가 당사자인가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비장애인과 대별하여 생각할 때는 장애인이 당사자이고, 흔히 장애인 당사자 주의라 할 때는 이를 의미한다. 그러나 장애인들 내부로 들어왔을 때 누가 당사자인가? 집합성과 보편성을 생각한다면, 남성 장애인이 여성 장애인을, 신체적 장애인이 정신적 장애인을, 경증 장애인이 중증 장애인의 차별과 억압을 적절히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중·삼중의 차별과 억압에 직면해 있는 장애인 내의 또 다른 소수자에게는 평균적인 처방으로는 부족하다. 더구나 장애 운동 내에서조차 여성 장애인, 정신적 장애인, 중증 장애인의 ‘당사자’의 참여가 극히 저조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자 중에도 성별,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할당하거나 아예 이러한 요인들을 참작하여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자의 비율을 10%를 초과하여 추천하도록 한다면 더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비례대표 후보자의 최소한 10%를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하든 아니면 더 나아가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자 중에서도 성별,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강제화하든 하기 위해서는, 다른 소수자와 달리 왜 장애인에게만 그러한 ‘특별대우’를 해야만 하느냐 하는 정치권의 논리에 대응하여 어떤 면에서 장애인이 다른 소수자들보다 더 소수자인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장애계 내에서 준비되어야 한다. 더구나 이 첫 번째 방법은 몇몇 사람이나 단체에 의해 주도되는 엘리트 정치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장애인 정치참여 방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들이 장애계가 내놓은 이슈들을 그들의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제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장애계가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로써, 올해에도 대통령 선거를



제16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즈음하여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반가운 일이다. 물론 그것이 공약화되도록 현실적이면서도 진일보한 이슈를 장애계가 내놓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끊임없이 모니터링 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장애인의 목소리를 공약화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표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장애인의 표가 몇백만이 되고 장애인 가족 등 관련자를 합치면 상당하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대형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는 지역이 아니고는 실제로 장애인의 표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정치인들에게 인식시키는 데는 역부족인 느낌이 든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에서 장애인 관련 공약을 내놓을 때나 비례대표를 추천할 때도 다분히 장식용이나 선전용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정치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되는 것은 투표를 통해서이며, 이것이 장애인의 정치참여 방법 중 세 번째이다.

그러나 어디 장애인들이 투표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가? 하고 싶어도 포기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하는 것은 장애인이면 누구나 아는 일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선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선거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제65조(선거공보) 제4항, 제70조(방송광고) 제6항,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 연설의 방송) 제2항,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제8항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법은 모두 임의규정이어서 법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므로 이들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의 개정 운동이 필요하며, 이것은 선거에 닥쳐서 할 일이 아니고 선거철이 아닌 평소에 해야 했을 일이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미국의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선거 접근법’ (Voting Accessibility for the Elderly and Handicapped Act)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세 번째 방법도 간접적이고 대의적인 방식이며 직접적이고 참여적인 방식은 아니다. 우리는 흔히 국가 수준에서는 대의적인 방법이 거의 유일한 정치참여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 그러나 대의 정치의 한계점을 바라보면서 요즈음 다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직접 참여 방식의 정치이다. 즉, 장애 대중 스스로가 장애 이슈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장애 대중이 정치적인 것은 아니며, 모든 장애인이 당사자이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느냐면 그 역시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장애인 당사자는 ‘장애인으로서의 자존감과 억압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바이며, 이러한 사람들이 장애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주체적으로 결정권을 행사하려는 것이 진정한 ‘당사자주의’라 본다. 따라서 장애 대중이 장애와 장애 문제를 주체적·정치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의식을 고양시키고 정치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이를 조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식화되고 정치적인 장애인은 그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와 국가에 직접적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이며 중요한 정치참여 방법이다.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엘리트 정치에서 출발하여 장애 대중의 정치에 이르는 방식으로, 또한 간접적이고 대의적인 방법에서 직접적이고 참여적인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이제 본 강의에서는 먼저, 어떤 장애 이슈를 정책화할 수 있을지 살펴보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각 정당에서 공개한 장애인 정책공약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한다. 그런데 장애인의 욕구라고 하는 것이 성별, 나이, 장애 유형·정도 등에 따라 다양할 것이므로 그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공약에 어떤 것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공약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이란 찾기 어렵다. 그러나 대선 기간 국민의힘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 공개한 장애인 정책공약을 <표>와 같이 분야별로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장애인의 정치참여가 정치적 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직화를 통해 주체가 형성되어야 하고, 이런 맥락에서 ‘장애인당사자의 정치세력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에 본 강의에서는 다음으로, 외국의 장애운동의 배경과 역사를 요약함으로써 장애인의 정치세력화에 있어 일고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장애인 정책공약의 비교·평가

<표> 제20대 대통령 선거 장애인 정책공약의 비교

| 분야 | 국민의힘 | 더불어민주당 | 정의당 |
|----|--|---|--|
| 교육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영·유아,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확대 · 장애인 대학교육 기회 확대 · 장애인 평생교육 보장 | — |
| 고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형 장애인 인재 육성 ·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일자리 기회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형 장애인 공기업 설립 |
| 소득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차별 없이 장애인연금 지급 ·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장애인에 대해 정부 임금 보조 제도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최저임금적용 |
| 건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의료지원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제도 전면 확대로 구강건강 향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치과 주치의 도입 등 장애인 건강권 보장 |



제16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 분야 | 국민의힘 | 더불어민주당 | 정의당 |
|--------------|--|--|--|
| 주거 | — | | · 탈시설 10년 로드맵 마련 |
| 접근성 | · 장애인 이동·교통권 보장 · 편의시설 확대 · 장애인의 방송 이용 환경 확대 |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생활 지원 - 공공주택과 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 확충 - 차별 없고 자유로운 대중교통 이용, 특별교통수단 지원 등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추진 - 유니버설디자인 추진 - 장애인 재난정책 전담부서 설치 ·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 | · 저상버스 100% 실현 등 무장애 환경 구축 · 감각장애인 권리 보장 - 청각장애인 수어서비스 확대 - 시각장애인 화면해설 확대 - 시청각장애인의 사소통 지원 체계 마련 |
| 안전 | · 장애인 대상 재난 안전 정보 제공 의무화 | | — |
| 문화·예술·체육 | · 장애인의 문화·체육 이용 환경 확대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 — | — |
| 전달 체계 | ·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 · 장애인 스스로 정책과 서비스를 결정하는 시스템 구축 | · 등록제 폐지 · 활동지원사 월급제 시행 |
| 재원 | — | — | · 장애인 예산 OECD 평균 확보 |
| 다중 차별 경험 장애인 | · 발달 지연·장애 영·유아를 위한 국가 조기 개입 추진 | · 모든 장애인에 대한 이중 차별 방지 대책 마련 - 장애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 고령 장애인을 위한 방문 재활서비스 도입, 맞춤형 사회참여, 의료 서비스 제공 등 지원체계 확충 - 발달 지연 영유아를 위한 장애 조기 발견 및 재활 지원 서비스 체계 강화, 양육자 상담·코칭 서비스 지원 ·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 | · 발달장애인·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 · 정신장애인 권리 보장 - 정신장애인 지역 사회 서비스 확대 |
| 법률 | — | — | ·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서비스법의 제정 |

먼저, 세 정당의 장애인 정책공약에서 분야별로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고용 분야에 있어서 국민의힘에 ‘4차 산업형 장애인 인재 육성’이라는 공약이 하나 더 있기는

하였지만, 세 정당 모두 장애인 고용 기회의 확대를 약속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장애인 치과 주치의로 특정하기는 하였지만, 세 정당 모두 장애인 주치의 등 장애인 의료지원 확대를 통한 장애인 건강의 향상을 추구하였다. 또한 세 정당 모두 장애인의 이동권, 시설 접근권, 정보 접근권 등의 확대를 공약으로 하였다. 그 밖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이 재난 시 매우 취약함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고, 발달 지연 영·유아를 위한 조기 개입도 약속하였다. 이들 공통적인 장애인 정책공약은 각 정당에서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므로, 향후 이를 실제로 추진하기만 한다면 그 과정에서 외부에서의 정치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어 국민의힘만의 고유한 정책공약을 보면,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있어서 장애인의 문화·체육 이용 환경 확대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를 약속하였다. 특히, 전자는 문화·예술·체육에 있어서 소비자 혹은 향유자로서의 장애인을 위한 공약이고, 후자는 생산자로서의 장애인을 위한 공약이라고 볼 때, 이는 매우 균형 잡힌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인이 질 높은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서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이들 공약은 꼭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전달체계에 관한 공약은 세 당 모두에서 등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장애인은 기관·시설에서 서비스를 받고 이를 제공한 기관·시설은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비용을 보전 받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장애인의 선택·결정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장애인활동지원을 비롯한 몇몇 제도에서 바우처가 활용되어 기관에 대한 선택권이 일부 보장되고는 있지만,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는 역시 한계가 있다. 이에 장애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자기가 받고 싶은 서비스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예산제가 도입된다면, 이는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에서의 획기적인 전환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개인예산제가 도입될 때 각 서비스 비용의 합산보다도 적은 금액이 장애인에게 주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한 과연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질 만큼 실제로 서비스의 종류와 양이 충분한가 하는 일부 장애인단체의 지적도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의 정책 공약집에 의하면, 서비스의 칸막이를 없애고 서비스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말은 있어도 장애인에게 현금을 직접 지불한다는 말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현금이 아닌 형태로 주어진 액수 안에서 단지 서비스 선택권의 확대를 개인예산제로 치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본인으로서는 의심이 간다. 마지막으로, 다른 당의 장애인 정책공약에는 있지만 국민의힘에는 없는 공약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교육 분야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장애 영·유아,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부터 장애인 대학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에 이르는, 전 생애에 걸친 교육의 확대를 공약하였다. 충분하고 적절한 교육의 부재에서 장애인의 실업과 빈곤 등이 비롯된다면, 장애인의 교육은 장애인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시발점



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소득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3급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장애인에 대해 정부 임금 보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였고, 정의당에서는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를 삭제함으로써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국민의힘에서 실제로 큰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소득보장 공약은 아예 언급하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셋째, 주거와 관련하여 정의당에서는 10년 내 탈 시설을 완성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하였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공주택과 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을 확충하겠다고 하였다. 물론 거주시설에 자녀를 입소시키고 있는 부모들과 시설 측에서 탈 시설을 반대하고는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탈 시설이 이미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면, 올해 초부터 그나마 시작한 ‘탈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사업’ 이 그냥 시범사업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무엇보다도 탈 시설을 반대하는 측의 주요 이유 중의 하나가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의 부족이라고 한다면,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주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원주택을 확충하는 것은 큰 반대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라 할 것이다.

넷째,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장애인 스스로 정책과 서비스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 위원회로 격상시키겠다고 하였다. 또한 정의당에서는 장애인등록제를 폐지하겠다고 하였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대안으로 장애인 서비스 신청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였다. 그동안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했다는 것은 최근까지 그 위원회의 위원이었던 본인으로서도 공감하는 바이어서, 대통령 직속이라는 위상 외에도 국가장애인위원회가 상설화된다면 명실공히 장애인 정책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의료적 기준에 근거한 관 주도의 장애인등록을 하라는 것은 지극히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었는데, 장애인이 서비스를 신청하고 그 적격 여부를 서비스별로 평가받는다면, 이는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출발이 될 것이다. 다섯째, 자원과 관련하여 정의당에서는 OECD 평균의 장애인 예산 확보를 약속하였다. 아무리 근사해 보이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자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정책은 미사여구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향후 장애인 정책을 위한 충분한 자원을 마련하지 않는 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공무원의 변명을 장애인들이 또다시 5년 동안 들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여섯째, 우리 사회에는 다중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발달 지연 영유아 외에도 장애 여성과 고령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정의당과 더불어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예산이 한정된다고 할 때 정치경제적으로는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소위 ‘혜택’ 이 돌아가게 하고 싶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더 소외된 사람들에게 내려가는 정책이야말로 우리 복지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될 것이다.

III. 외국의 장애 운동의 배경과 역사

1. 미국의 장애 운동

장애 운동이 언제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몇몇 역사가들은 식별 가능하고 현저한 장애를 가진 소수의 장애인이 직업재활·사회서비스·정치활동과 같은 쟁점과 관련되기 시작했던 수십 년 전으로 되돌아간다. 이 시기의 사람들로써 Mary Switzer와 Helen Keller가 있었다. 오늘날, 많은 활동가는 현대 장애 운동을 구성하는 것의 시작을 1970년대 초반이라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현대 장애 운동은 장애인의 능력 부여를 그 목표로 하고 있다.

학생 운동과 인권 운동에 의해 영향을 받고 그 운동들에 직접 관여한 장애인들이 장애에 관련된 쟁점들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독립에 대한 장벽을 정치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기 시작했던 것이다. 즉, 그 장벽은 건축·정보에 있어서 접근의 어려움, 빈곤, 차별 등과 같은 외부적인 것이든 아니면 자존감의 결핍과 같은 내부적인 것이었다.

활동가들이 주요 정치적·사회적 쟁점을 과제로 삼기 시작하면서, 장애 운동이 발전·성장하기 시작했다. 1977년에 장애 활동가들은 1973년의 재활법(Rehabilitation Act)의 제504항을 실행할 것을 Carter 행정부에 요구하며 25일 동안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빌딩을 점거했다. 1980년대 초 미국과 세계를 휩쓴 신보수주의 경향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장애 활동가들은 호의적이 아닌 상황에서 작지만 중요한 투쟁을 계속했다. 1983년에 ‘접근 가능한 대중교통을 위한 미국 장애인’ (American Disabled for Accessible Public Transit, ADAPT)이라는 조직이 미국의 몇몇 도시에서 장애 활동가에 의해 형성되어, 이동 장애인이 대중교통에 접근하기 어려움을 강조했다. 장애 운동의 활동 범위를 넓히면서, 장애 활동가들은 접근하기 쉽고 가격이 알맞은 주택의 부족, 엄청나게 비싼 개호 비용 때문에 가난하고 젊은 중증 장애인의 요양원 수용, 장애 학생을 일반학급에 통합시키기 위한 투쟁, 일반대중이 장애와 관계하고 장애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려는 노력 등의 영역들을 포함했다. 의식 증대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특정 장애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한, 보다 두드러진 현실참여 의식이었는데, 한편으로는 장애에 관한 신화와 싸우고 장애에 관하여 사람들(장애인·비장애인 모두)의 의식을 증대시키기 위한 동시 노력이 있었다. 예를 들어, ‘Jerry Lewis의 장시간 텔레비전 모금 방송’ (Jerry Lewis Telethon)에 대한 보이콧 운동은 동정심을 공격목표로 삼았다 — 주 슬로건은 ‘동정심에 오줌을’ (piss on pity)이었다. 또한 ‘특수 서비스’ (special services)라는 용어에 초점을 맞추었다 — “특수는 분리를 의미 한다” (special means segregated). 요양원에 반대하는 운동에서는 요양원 산업과 의료 시설을 공격목표로 정하였다. — “우리는 아프지 않다, 우리를 해방시키라” (we are not sick, free our people).



그러나 장애 운동 자체는 이데올로기의 중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페미니스트 이론이 대단히 다른 관점을 가진 무수한 진영으로 쪼개졌던 것처럼, 장애 운동 내에 다양한 정치적 관점과 정치적 경향이 있어 왔다. 이들에게는 규모나 영향력 순으로, 장애 분야에서 일하는 활동가, 자유주의의 정치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 활동가, 몇몇 장애 관련 조직에 의한 쟁점에 관련된 활동가, 사회서비스·학계·정부 전문가 유형 - 몇몇은 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 -, Alinsky¹⁾같은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특정 쟁점을 중심으로 하여 주로 활동하는 - ADAPT 그룹과 같은 - 투쟁적인 사람들, 교육의 쟁점에 주로 관계하는 장애아동 부모들, ADAPT나 학문적·정책 연구 또는 자립생활센터에 관계할지도 모르는 좌파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유한 장애인이거나 자선사업을 통해 연결된 사람들이 부르주아 집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장애 운동 내에는 특정 쟁점들이 있어, 그 안에서 다양한 정치적 성향 사이에서 전략상 불일치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 이것은 의료개혁·교육·주택과 같은 국가적 관심사를 중심으로 분명히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정치적·계급적 지향을 보면 그들의 문제와 해결책이 얼마나 광범위한가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을 알 수 있었다. 한 좋은 예는 교육일지도 모른다. 대부분 장애와 관련하여 요구사항은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포함했다. 즉, 장애 학생은 일반교실에서 교육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론자와 좌파 사람들은 여기서 한술 더 떴다. 전체 교육 체계가 - 인종과 계급이 중요한 식별자인 도시 지역에서 특히 - 뒤죽박죽이며, 그것은 자본주의의 전체적인 우선순위의 반영이고, 대부분의 학생이 질 나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은 교육에서 일어날 필요가 있는 근본적인 구조 변화의 단지 한 부분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본질적으로, 교육에서의 평등은 매우 한정된 비전이었다.

또한 운동의 관리와 지향에 관하여 장애 운동에서 장애인 활동가와 그 밖의 사람들 사이에 정치적인 싸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사회서비스와 정부 배경을 가진 다수의 사람은 정부 프로그램, '특수' 학교, 재활 기관, - 장애인에 의해서가 아니고 -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클럽에서 출세를 했다. 활동가들이 장애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서의 중심적인 지위와 민권 의제를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반작용이 나타났다. 보수파는 현상(現狀)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활동가들의 정치활동과 투쟁성을 거부했다. 게다가 장애 운동의 정치활동은 직·간접적으로 보수적 관점으로 하여금 비평을 받도록 했고, 비장애인으로 하여금 후원자와 조연의 역할로 격하시켰다. 이러한 갈등과 차이는 매우 복잡했다. 다시 교육의 예를 들자면, 장애아동의 부모들은 그 분야에서 옹호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부모들은 장애인에 비해서 손색이 없는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분명히 부모들은 모든 교육과정에서 교육에 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부모들의 지향과 장애 운동의 지향은 종종 갈라졌다. 즉, 장애 권리와 교육에 적극적인 부모들의 대부분은 그들의 자식의 특별한 욕구 또는 감지된 욕구 때문에 그것을 했다. 그러나 장애 활동가들은 개인적으로 분리 교육을 경험하고 모든 분리 교육을 없앨 필요성에 대해 정치의식에

1) 민주적 급진주의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다.



이르렀기 때문에 교육 문제에 관여하게 되었다. 어떠한 내막이건 간에, 장애 운동은 장애인들이 위험이 있든 없든 일상의 생활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보다 큰 그림을 보았다. 반면에 부모들은 대개 자신의 자녀만 단지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어떻게 하면 장애 운동 내에서 가능한 한 많은 힘을 합치면서도 장애인 활동가의 손에서 그 통제권을 유지하느냐에 관한 문제를 던져주었다. 다행히도, 장애 운동 내의 개인들이 함께 일하며, 장애 운동이 성장·성공하는 것을 도와왔던 공통 입장을 찾을 수 있는 많은 중복 부분이 있었다.

이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자립생활센터이었다. 첫 번째 센터인 버클리 자립생활센터는 1973년도에 시작되었지만, 대부분의 자립생활센터는 1980년대 초반에 세워졌다. 지금은 300개가 넘게 있다. 자립생활센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장애 운동 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초기 장애 지도자들의 대부분이 자립생활센터에, 그리고 보다 광범위한 장애 운동의 기본 철학의 기초의 많은 것을 형성했던 자립생활의 철학(자조를 통한 능력 부여)에 관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가장 광범위한 함의로 말하자면, 자립생활운동은 수백만 미국 장애인에 있어 인권 운동이었다. 그것은 분리와 차별에 반대하는 항의의 물결이었고, 사회의 책임과 기쁨을 완전히 공유할 장애인의 권리와 능력 확인의 물결이었다.

사실, 미국 여기저기에서 자립생활센터의 확산은 지난 50년 동안 장애인을 위한 많은 중요한 진보 중의 하나이다. 다른 것들로는 민권회복법(Civil Rights Restoration Act), 공정주택개정법(Fair Housing Amendments Act),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등과 같은 중요 법률의 통과, 몇몇 도시에서 활동가의 중심핵의 발달 - 몇몇은 ADAPT에, 그 밖의 사람들은 지역의 그룹과 문제에 연결됨 -, 정보교환과 조정의 강화 등을 포함한다. 특히, 장애 활동가에 의한 수년간의 동원과 법안 통과 운동의 극치인 1990년 미국장애인법의 통과는 많은 전선(戰線)에서 승리로 보였다. 이처럼 미국의 운동은 한정되고 깨지기 쉬우나 중요한 '성숙'에 도달했다. 그것은 반가운 소식이었다. 나쁜 소식은 미국장애인법과 장애인이 사회정의 활동가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우익의 반발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장애인 사회 대부분의 현실(극심한 고립, 실업의 만연, 질 나쁜 교육, 계속되는 차별·무시·학대·시설수용·자기연민 등) 또한 좋지 않다. 장애인이 미국에서 아직도 사회의 주류에서 가장 처지고 미조직된 부분이라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고, 50년 전보다 단지 점진적으로만 형편이 더 좋아졌다는 것도 거의 틀림없다. 게다가 미국에서 일반적인 수동적 정치 문화와 결부되어, 장애 운동 내에서 강한 좌익 세력의 부재는 운동 자체 내에서 보수주의와 관료주의의 성장을 낳았다. 게다가 장애 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 문제들은 아직 많다. 이들 문제란 ADA와 다른 법적 명령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다수의 특정 쟁점을 중심으로 하여 어떻게 조직하는가, 장애 운동 내에서 계급·인종·성별의 문제와 어떻게 씨름하는가, 장애에 대한 차별이나 뒤떨어진 사고방식과 어떻게 싸우는가, 선거 정치와 관련하여 장애 운동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그리고 민주당이나 다른 정치적 성향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다른 문제나 운동과는 언제 어떻게 연합하는가 등을 포함한다.



2. 일본의 장애 운동

일본의 장애 운동은 1960년대와 1970년대 베트남 전 반대 운동, 학생 운동, 환경 운동, 페미니스트 운동, Buraku²⁾ 해방 운동 등, 그 시대의 다른 사회 운동과 함께 태어났다. 장애인들은 차별 대우에 대한 항의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본 절에서는 Aoi Shiba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일본의 장애 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던 뇌성마비인 그룹이다.

1957년에 교육받은 엘리트 중 몇몇이 뇌성마비인을 위한 Aoi Shiba라 불리는 하나의 그룹을 설립했다. 처음에 그 그룹의 활동은 다른 장애인 조직이 각 회원에게 제공했던 활동인, 레크리에이션과 사회화만 제한되었다. 그러다 그 그룹은 뇌성마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보다 깊은 자각을 발전시키기 시작하였다. 1961년에 그들은 일본 정부의 보건복지부와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들은 장애인을 위한 복지연금의 증대를 포함하여 12가지의 정책 변화를 요구하였다. 그들의 요구에는 영구 주거 시설의 설치와 같은, 지금의 장애 옹호자들이 강하게 반대했을 항목도 포함되어 있었다. Aoi Shiba가 성장하면서, 새로운 그룹을 흡수함에 따라 Aoi Shiba의 지도부도 바뀌었고, 방향 역시 바뀌었다. Aoi Shiba는 1976년 장애 조직들의 연합인 Zenshoren을 설립하는 데 지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다른 정치적인 조직에서처럼 Aoi Shiba도 내부 갈등에 직면했다. 이것 중의 하나는 그 운동 안에 비장애인을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된 것이었다. ‘장애 권위’ (disability authority)를 세우기 위해 몇몇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은 단지 ‘수족’ –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요구에 전념해야 하고 그들의 의견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 – 이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개인 보조자에게 대금을 지불한다는 생각은 그 운동의 초기 활동가들의 마음에는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비장애인 지지자들은 그들이 무료의 노동을 제공하지만, 그 운동에 대하여 발언권은 없다는 그러한 종속을 받아들일기를 거부했다.

그들이 부닥친 또 다른 문제는 억압의 등급을 매기고 있었다는 것인데, 거기에서 성차별주의가 가장 경미한 것으로 분류되었다. 한 어머니가 자신의 장애아를 죽였을 때, 장애 운동은 어머니들을 적으로 보았다. 그들의 슬로건은 ‘부모님, 죽이지 마세요!’ 가 아니라 ‘어머니, 죽이지 마세요!’ 였다. 장애 운동은 이 사건에서 성 차별주의와 ‘능력주의’ (ableism)의 교차점을 인정하는 데 실패했다. 그렇게 사회의 다른 억압을 무시함에 의하여, 장애 운동은 많은 사람에게 불편한 곳이 되었다. Aoi Shiba는 많은 쟁점에서의 의견 차이 때문에 내부에서 조직 갈등을 경험했다. 많은 사람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조직을 떠났다.

2) Buraku 사람들은 150년 전에 무사 시대 동안 조상이 최하위의 사회계급에 속했던 일본 국민이다. 그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



그러나 모든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Aoi Shiba는 일본의 현대 장애 운동의 빛나는 별로 기억되어야 한다. 현재 장애 운동의 많은 지도자가 Aoi Shiba 운동에 의해 그들의 의식이 높아졌으며 결과적으로 계속 활동적이었다.

1970년대 장애 운동 안에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몇몇 장애 활동가들은 시설이나 부모 집의 제한을 떠나 자원 활동 보조자에 의해 지원받는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1980년대에는, 장애 조직은 차별 사건에 반응하여 시위를 이끌기보다는 장애인의 일상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지역 정부와 협상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였다. 1980년대에 이르자, 정부 기관들은 협상 테이블에 장애인이 있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었고, 장애 조직은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몇몇 영역에서 장애 조직은 그들 자신의 개인 보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서비스 공급자가 됨에 의하여 장애 조직은 시설이나 부모 집을 떠나고 싶지만, 방법을 몰랐던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도왔다. 장애 조직은 보조라는 것은 - 금전적 보상 없이 - '순수' 해야 한다고 여전히 믿고 있는 1970년대 운동 동료 중 몇몇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몇 가지 의견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내의 요구에 반응하며 발전했다.

개인 보조라는 쟁점 이외에도, 1980년대 장애 조직은 많은 영역에서 활동적이었다. 장애 옹호자들이 시의회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질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을 때, 24시간 보조자의 돌봄을 필요로 했던 한 어머니가 의원직에 임후보했고 1990년에 성공하였다.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는 미국 장애 운동과 자립생활운동의 선구자인 Ed Roberts와 Judy Heumann을 포함하여 미국으로부터 옹호자들의 방문으로 이끌었다. 1981년 일본을 방문할 때까지 미국의 장애 운동은 미국 도시에 몇 개의 자립생활센터를 설립했었다. 그 당시 Ed Roberts는 캘리포니아 주 직업재활국(Department of Vocational Rehabilitation)의 국장이었고, Judy Heumann은 버클리 자립생활 센터의 부(副)관리자였다. 그들과 다른 미국 옹호자들은 많은 일본 도시에서 회의에 참석했고, 정부와 지역사회 기관의 중요한 임원 자격으로뿐 아니라 자립생활센터의 설명으로 장애인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물론, 참석하고 있던 일본인 중에는 1970년대 장애 운동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왔었던 사람들도 있었다.

미국의 것을 본으로 삼아 1986년에 첫 번째 자립생활센터가 도쿄 교외에서 문을 열었는데, 미국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주로 직원으로 근무했다. 1991년에 자립생활센터의 협회인 '일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Japan Council on Independent Living Centers)가 자립생활운동을 조정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본 협의회는 새로운 센터의 창설을 원조하고, 기존 센터들 간에 협력을 촉진하며, 그들의 활동을 유지·향상시키는 것을 도울 정부 계약과 민간재단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대중의 인정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에 관하여 대중을 교육하며, 모든 그러한 침해의 근절을 위하여 옹호하고 있다.



3. 향후 한국 장애 운동이 가야 할 방향

지난 4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장애 운동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으며, 근래 들어 그 역동성은 놀랄 만하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장애 운동은 많은 영역에서 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중요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 1) 장애 운동이 중앙에서 지역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 2) 장애 운동 내에 권력이 분산되어야 하고 내부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 3) 장애 운동 내에서 여성 장애인, 지적 장애인, 중증 장애인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 4) 장애 운동은 장애 대중에 근거해야 한다.
- 5) 장애 대중이 장애와 장애 문제를 정치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의식을 고양시키고, 정치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참고문헌

- 공직선거법, 법률 제18841호 (2022. 4. 20. 일부개정).
- 국민의힘 (2022).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서울: 국민의힘.
- 더불어민주당 (2022). 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서울: 더불어민주당.
- 소장섭 (2004). 장애인 정치세력화 열풍 무엇을 남겼나. http://www.ablenews.co.kr/NewsSpecial/SpecialContent.asp?NewsCode=4240&C_code=CB&SpecialCode=37.
- 신용호 (2005). 장애인 정치참여의 발자취. *한국장총*, 156, 2-10.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1). 장애우복지개론. 서울: 나눔의집.
- 정의당 (2022).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의당 정책공약집. 서울: 정의당.
- Charlton, J. I. (1994). The disability rights movement and the left. *Monthly Review: Independent Socialist Magazine*, 46(3), 77-85.
- Hayashi, R., & Okuhira, M. (2001). The disability rights movement in Japan: Past, present and future. *Disability & Society*, 16(6), 855-869.
- Malhotra, R. (2001). The politics of the disability rights movements. *New Politics*, 8(3), 65-75.

제16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한국사회 여성장애인
실태 및 정책분석]

- 6강 -

- 일 시 : 2022년 11월 03일 (목) 14:00~17:00
- 장 소 : 여의도 이룸센터 2층 소교육실
- 강 사 : 서해정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 전환지원팀장]





한국사회 여성장애인 실태 및 정책 분석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해정

□ 목차

- 1 여성장애인 현황 및 실태
- 2 여성장애인 지원 법률 및 정책
- 3 최근 여성장애인 정책 동향

1 여성장애인 현황 및 실태

Part 1 여성장애인 현황 및 실태

0. 문제제기

- 여성장애인은 국내외 정책과 서비스의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배제, 소외**되었음
- 여성장애인은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과 **장애인**으로서 겪는 어려움이 교차하여 새로운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음
- 통계적으로도 여성장애인의 열악한 상황은 교육, 고용, 건강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있으며, 차별과 폭력에도 쉽게 노출되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
- 2007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6조(2009.1.10발효):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이 다중적인 차별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하고 동등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요구
-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장애여성의 현실은 어떠한가?

Part 1 여성장애인 현황 및 실태

1. 일반적 현황

- 2021년 기준 전국 등록장애인 수(장애인 현황, 보건복지부)는 2,644,700명으로 여성 1,116,420명(42.2%), 남성 1,528,280명임
- 여성장애인 중 가장 많은 장애 유형은 **지체(500,326명, 44.8%), 청각, 언어(201,930명, 18.1%), 뇌병변(105,708명, 9.5%)**순이며
- 최근 지적장애 86,341명(전체 217,108명의 39.8%), 정신장애 50,787명(전체 103,525명의 49.1%)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Part 1 여성장애인 현황 및 실태

2. 교육 관련 현황

-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여성장애인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36.5%**, 고등학교 20.5%, 무학 19.1%, 중학교 14.5%, 대학이상 9.0%로 나타났음.
- 여성장애인의 경우 초등학교 이하 학력이 55.6%이며, 대학 이상이 9.0%로 나타났는데, 남성장애인 초등학교 이하 학력 24.5%, 대학 이상 19.7%와 비교하면 **교육 수준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음.

<성별에 따른 장애인 교육수준>
(단위 %)

| 구분 | 여성 | 남성 |
|------|-------|-------|
| 무학 | 19.1 | 4.0 |
| 초등학교 | 36.5 | 20.5 |
| 중학교 | 14.5 | 18.3 |
| 고등학교 | 20.9 | 37.6 |
| 대학이상 | 9.0 | 19.7 |
| 계 | 100.0 | 100.0 |

출처: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Part 1 여성장애인 현황 및 실태

3. 경제적 수준 및 고용

1) 성별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 2021년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는 남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 47%, 고용률 43.8%인 것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24.1%, 고용률 22.2%로 남성의 절반 수준임**
- 실업률 또한 남성 6.9%, 여성 7.6%로 여성이 다소 높았음
- **장애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에 대한 성별 격차가 전체 인구보다 더 크게 나타남.**

<성별에 따른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
(단위 명, %)

출처: 2021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 성별 | 15세 이상 인구 | | 경제활동인구 | | 취업자 | | 실업자 | |
|-------|----|-----------|------|----------|------|----------|------|--------|-----|
| | | 인구수 | 비율 | 추정 수 | 경활률 | 인구수 | 고용률 | 인구수 | 실업률 |
| 장애 인구 | 여성 | 1092491 | 42.4 | 262849 | 24.1 | 242768 | 22.2 | 20081 | 7.6 |
| | 남성 | 1482416 | 57.6 | 697101 | 47.0 | 649036 | 43.8 | 48065 | 6.9 |
| 전체 인구 | 여성 | 22865000 | 50.8 | 11905000 | 54.2 | 11905000 | 52.1 | 495000 | 4.0 |
| | 남성 | 22184000 | 49.2 | 15645000 | 73.5 | 15645000 | 70.5 | 653000 | 4.0 |

Part 1 여성장애인 현황 및 실태

3. 경제적 수준 및 고용

2)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성별 분포

- 2021년 장애인 임금근로자는 여성이 180,606명 (29.2%), 남성 437,908명(70.6%)으로 **남성장애인 임금 근로자가 여성의 2배 이상 많았음.** 전체인구의 임금 근로자 성별 차이(약 5%)보다 매우 높은 수준임
- 장애인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 61.8%, 여성 82.5%**로 대다수의 여성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고용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전체인구 임금근로자 남성 31.0%, 여성 47.4%가 비정규직인 것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임

장애 임금근로자의 성별 분포
(전체 인구와 비교)
(단위 명, %)

| 성별 | 전체인구 | | 장애인 | |
|----|------------|------|---------|------|
| | 추정 수 | 비율 | 추정 수 | 비율 |
| 여성 | 9,476,000 | 45.0 | 180,606 | 29.2 |
| 남성 | 11,517,000 | 55.0 | 437,908 | 70.6 |

출처: 2021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Part 1 여성장애인 현황 및 실태

4. 학대

- 2020년 장애인 학대 피해 사례 1,264건 중 여성장애인 피해사례는 총 650건으로 전체의 51.4%를 차지함
- 특히 성적 학대 피해의 경우 피해자 85.1%가 여성장애인으로 남성장애인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했음
- 그 외에도 정서적 학대 피해 55.3%가 여성장애인으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 경제적 착취 피해의 경우 여성 장애인이 39.3%로 남성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임.

<성별에 따른 장애인 학대유형>
(단위 명, %)

| 성별 | 계 | | 신체적 학대 | | 정서적 학대 | | 성적 학대 | | 경제적 착취 | | 방임 | |
|----|-----|------|--------|------|--------|------|-------|------|--------|------|----|------|
| | 명수 | 비율 | 명수 | 비율 | 명수 | 비율 | 명수 | 비율 | 명수 | 비율 | 명수 | 비율 |
| 여성 | 650 | 51.4 | 182 | 48.1 | 172 | 55.3 | 114 | 85.1 | 126 | 39.3 | 56 | 46.7 |
| 남성 | 614 | 48.6 | 196 | 51.9 | 139 | 44.7 | 20 | 14.9 | 195 | 60.7 | 64 | 53.3 |

출처: 2020년 장애인학대현황(보건복지부)

Part 1 여성장애인 현황 및 실태

5.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 성별 장애인의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 여성과 남성 장애인 모두 1순위로 소득보장, 2순위 의료보장을 꼽았음.
- 하지만 남성장애인의 11.5%, 12.6%가, 여성장애인의 6.1%, 7.7%가 1, 2순위로 고용보장을 요구해 여성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관심이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보임.

<성별 장애인의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1,2순위>
(단위: %)

| 구분 | 1순위 | | 2순위 | |
|----------------|------|------|------|------|
| | 여성 | 남성 | 여성 | 남성 |
| 소득보장 | 39.1 | 42.4 | 15.5 | 14.3 |
| 의료보장 | 31.3 | 24.8 | 36.3 | 34.9 |
| 고용보장 | 6.1 | 11.5 | 7.7 | 12.6 |
| 주거보장 | 5.2 | 5.1 | 10.4 | 10.4 |
| 이동권 보장 | 4.2 | 2.0 | 6.2 | 3.3 |
| ... (이하 항목 생략) | | | | |

출처: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Part 1 여성장애인 현황 및 실태

5.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여성장애인으로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 1,2순위>

- 여성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임신/출산 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과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 활동보조인, 상담서비스, 가사도우미, 출산비용 지원 등을 우선으로 꼽았음
- 일상생활을 지원해줄 수 있는 지원, 출산/자녀양육 관련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구분 | 1순위 | 2순위 | (단위: %) |
|------------------|------|------|---------|
| 임신출산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 16.0 | 3.8 | |
| 임신출산육가관련 핫라인서비스 | 4.8 | 8.2 | |
| 출산비용 지원 | 9.1 | 5.5 | |
|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전문병원 | 8.0 | 7.1 | |
| 산후조리 서비스 | 7.2 | 9.5 | |
| 육아용품 대여 | 0. | 1.4 | |
|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 13.2 | 15.2 | |
| 자녀교육도우미 | 2.4 | 12.9 | |
| 가사도우미 | 7.5 | 7.0 | |
| 활동보조인 | 10.1 | 5.2 | |
| 건강관리프로그램 | 7.0 | 8.7 | |
| ... (이하 항목 생략) | | | |

출처: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Part 1 여성장애인 현황 및 실태

6. 통계로 본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결론

- 인구학적으로 지체장애인 비율 감소, 정신적장애인 비율 증가
- 등록장애인 중 만 65세 이상이 절반 수준인 49.9%로 여성장애인의 고령화 심각
- 낮은 학력 수준과 고용률
- 질병 및 질환(건강의 문제)
- 폭력 및 학대, 심각한 차별 경험 등

2 여성장애인 지원 법률 및 정책

Part 2 여성장애인 지원 법률 및 정책

1. 한국사회 장애인복지 정책 및 실천 변화

- 60~70년대: 보호와 분리
- 80년대: 훈련과 재활
- 90년대: 전문가 중심의 재활
- 2000년대~ 현재: 인권, 자립생활
- 최근 권리에 기반한 서비스 실천, 삶(서비스) 주체로서 장애인 부각
 - 당사자가 행복한 삶 지향
 - 장애인 중심의 지원계획
 - 장애인의 자기결정 존중
 - 지역사회 통합(inclusion)

Part 2 여성장애인 지원 법률 및 정책

2. 장애인 정책 예산

- 2021년 중앙정부의 장애인 예산 규모 : 총 6조 4,550억
- 해당 규모는 우리나라 중앙정부 전체 예산의 1.16%에 이르는 금액이며, 전년 보다 0.17%p 증가하여 1%를 초과하였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OECD 38개 회원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평균 20.0% 인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

<2021년 중앙정부 장애인 예산 규모>
(단위: 원)

| 구분 | 중앙정부 예산 규모 | 장애인 예산 규모 | 장애인 예산 비율(%) |
|-----------------|---------------|--------------|--------------|
| 중앙정부 예산 | 558조 | 6조 | 1.16 |
| 소관부처별 사회복지 총 예산 | 185조 | 4,550억 | 3.49 |
| 보건복지부 예산 | 89조 5,766억 | 4조 7,092억 | 5.23 |

출처: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2021), 2021년 장애인 정책 예산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Part 2 여성장애인 지원 법률 및 정책

2. 장애인 정책 예산

<2021년 중앙정부 장애인 정책 예산 영역별 분류 현황>
(단위: 천원, %)

| 구분 | 중앙정부 예산 규모 | 장애인 예산 비율(%) |
|--------------------|---------------|--------------|
| 소득보장 | 1,838,193,741 | 28.5 |
| 자립생활 | 1,519,622,000 | 23.5 |
| 고용취업 | 834,996,211 | 12.9 |
| 장애인시설 | 726,480,000 | 11.3 |
| 의료재활 | 665,448,492 | 10.3 |
| 기타 장애인 복지행정, 단체 지원 | 629,098,856 | 9.7 |
| 문화체육·정보 | 132,499,217 | 2.1 |
| 이동·편의 | 108,751,821 | 1.7 |
| 계 | 6,455,090,338 | 100 |

출처: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2021), 2021년 장애인 정책 예산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Part 2 여성장애인 지원 법률 및 정책

2. 장애인 정책 예산

- 지방재정 장애인 관련 지출은 11.6조원으로, 지방정부 전체 예산의 2.7%이며, **등록장애인 1인당으로는 442만원 지출**
- 장애인 관련 지출의 부문별 규모는 취약계층 지원, 체육, **사회복지일반**, 기초생활보장 순서로 예산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재정 장애인 예산 총액의 2.4%가 체육 부문의 예산 임
- 지방재정 장애인 예산 중 거주시설 예산은 1.5조원인데 비해 **탈 시설 및 자립지원 예산은 930억여 원으로 거주시설 예산의 6.3%에 불과**
- 전국 지방재정 장애인 예산 중 거주시설 예산 비중은 12.7%인데 비해 탈 시설 및 자립지원 예산의 비중은 0.8%에 불과

Part 2 여성장애인 지원 법률 및 정책

3. 국제협약

UN 장애인권리협약

4. 국내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고용촉진 직업재활법
장애인 건강권법
양성평등기본법
경력단절여성법



Part 2 여성장애인 지원 법률 및 정책

3. 국제협약 - UN장애인권리협약

- 2006년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UN장애인권리협약은 모든 장애인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보장하고 장애인의 고유한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3월 서명하고 2009년 1월 10일부터 발효되었음.
- 협약의 전반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제6조 장애여성'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을 규정하고 있음.

Part 2 여성장애인 지원 법률 및 정책

3. 국제협약 - UN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중 '장애여성' 관련 내용>

| 구분 | 내용 |
|-------------------------|---|
| 제6조 장애여성 | 1. 당사국은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다중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여성이 이 협약에서 정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의 완전한 발전, 진보 및 권한강화를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 5.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및 학대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기소하기 위하여, 여성과 아동에 중점을 둔 법률과 정책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법률과 정책을 마련한다. |
|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 나.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 장애소녀 및 장애노인에 대하여 사회보호 프로그램과 빈곤 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www.humanrights.go.kr)

Part 2 여성장애인 지원 법률 및 정책

3. 국제협약 - UN장애인권리협약

<장애여성관점에서의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장애인권리협약 비교>

| 구분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 장애인권리협약 |
|------|------------|---------|
| 차별형태 | 성차별 | 다중적차별 |
| 목표 | 지위향상 | 역량강화 |

Part 2 여성장애인 지원 법률 및 정책

4. 국내 법률

<장애인복지 법률 체계>

| 영역 | 기본법 | 개별법 |
|-------------|--------------------------------|---|
| 소득과 고용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권리 보장법 제정 예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
| 돌봄 및 일상생활지원 | | -장애인연금법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 구매 특별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 건강 | |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 주거 | |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지원법 |
| 접근성 |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한국수화언어법 -점자법 |
| 인권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 특정장애/연령 |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Part 2 여성장애인 지원 법률 및 정책

4. 국내 법률 - 1)장애인복지법

-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현재 9장 90조로 이루어져 있는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기본적인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등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실질적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보장하고 있음.
- 법적 성격상 사회법, 사회보장법 또는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서비스법, 장애인의 인권/재활/복지에 관한 기본법, 장애인 기본권 보장에 관한 일반법에 해당함
- 장애인복지법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내용은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제9조 2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지원 등)
 제55조(활동 급여의 지원)
 제59조 11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

Part 2 여성장애인 지원 법률 및 정책

1) 장애인복지법 -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 및 내용

| 조항 | 관련 내용 |
|--------------------|--|
| 제7조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 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제37조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제적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 도우미"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의 실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활동을 말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Part 2 여성장애인 지원 법률 및 정책

1) 장애인복지법 -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 및 내용

| 조항 | 관련 내용 |
|------------------|--|
| 제55조 활동지원 급여의 지원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 지원내용

활동지원서비스(지원 단가 14,805원) 출산 후 만 6개월 동안 월 한도액 1,080,000원 지원

Part 2 여성장애인 지원 법률 및 정책

4. 국내 법률 - 2)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007년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6장 5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활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33조, 제34조에서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와 지자체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조항 | 관련 내용 |
|--------------------|---|
| 제33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방식의 지원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



Part 2 여성장애인 지원 법률 및 정책

4. 국내 법률 -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

- 1990년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이 직업능력에 맞는 사회생활을 하고 이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제21조 1항, 제22조 2항, 제30조 3항에서 여성장애인 관련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Part 2 여성장애인 지원 법률 및 정책

4. 국내 법률 - 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2017년 제정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총 6장 2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6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에서 여성장애인의 건강 보건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Part 2 여성장애인 지원 법률 및 정책

장애인건강권법 -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 및 내용

| 조항 | 관련 내용 |
|--------------------------|--|
| 제6조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종합 계획의 수립 |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종합계획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 5. 모성권 보장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p> |
| 제14조 장애인 건강권 교육 |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권 관련 인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 3.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p> |

Part 2 여성장애인 지원 법률 및 정책

장애인건강권법 -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 및 내용

| 조항 | 관련 내용 |
|--------------------|--|
| 제19조 중앙장애인 보건의료 센터 |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p> <p>...10.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p> |
| 제20조 지역장애인 보건의료 센터 | <p>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p> <p>... 4.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p> |

Part 2 여성장애인 지원 법률 및 정책

4. 국내 법률 - 5) 양성평등기본법

- 2019년 6월에 시행된 양성평등 기본법은 전체,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것을 기본개념으로 함.
- 총 6장 5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3조에서 여성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조항 | 관련 내용 |
|---------------|---|
| 제 33조 복지증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Part 2 여성장애인 지원 법률 및 정책

4. 국내 법률 - 6)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 2008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은 2022년 6월 현재의 이름으로 전부 개정.
- 5장 2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조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에 장애특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항 | 관련 내용 |
|------------------------------|--|
|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Part 2 여성장애인 지원 법률 및 정책

5. 여성장애인 관련 국내정책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폭력피해 장애인 지원

Part 2 여성장애인 지원 법률 및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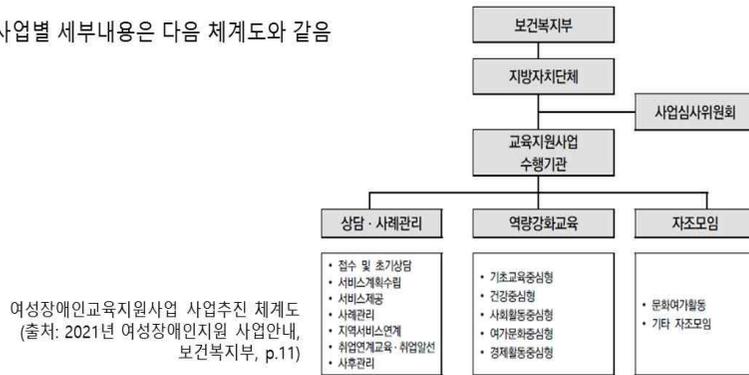
5. 국내 정책 - 1)여성장애인 교육지원

-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제약으로 역량강화의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들에게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항을 근거로 함
-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교육지원사업 수행 기관이 함께 상담/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 자조모임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Part 2 여성장애인 지원 법률 및 정책

5. 국내 정책 - 1)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다음 체계도와 같음



Part 2 여성장애인 지원 법률 및 정책

5. 국내 정책 - 2) 출산비용지원 사업

-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여성 출산비용지원 사업은 비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항 근거)
- 등록 여성장애인 대상 당해 년도 출산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을 지원함(2012년부터 실시)**.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Part 2 여성장애인 지원 법률 및 정책

5. 국내 정책 - 2) 출산비용지원 사업

- ✓ 국내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장은 국가단위의 건강증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서 배제되어 있음.
-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상의 모성건강증진계획은 비장애여성을 중심으로 수립되어 있고, 장애인건강증진계획에는 모성권에 앞서 건강권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룸.
- ✓ 현재 한국사회에서의 모성권 관련 제도 및 서비스는 임신과 출산, 양육에 한정하여 협의적 모성권의 의미로 해석되면서 일부 서비스 정책으로 실시되고 있음.

Part 2 여성장애인 지원 법률 및 정책

6. 국내 복지사업

- 국내 여성장애인 복지사업 현황은
 - 1) 결혼/출산, 2) 자녀양육/가사, 건강, 3) 여성장애인의 성,
 - 4) 권익옹호, 5) 일자리/자기계발, 6) 발달/고령장애여성, 7) 문화 여가로 구분할 수 있음.



Part 2 여성장애인 지원 법률 및 정책

6. 국내 복지사업 - 1)결혼/출산

| | 사업명 |
|---|--------------------------|
| 1 | 임신·출산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
| 2 | 출산비용 지원 |
| 3 |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전문병원 이용 지원 |
| 4 | 임신·출산·육아 관련 24시 도움 콜 서비스 |
| 5 | 서울시 산후조리 지원(홈 헬퍼 포함) |
| 6 | 일반육아용품 대여 |
| 7 | 여성장애인 전용 출산용품 지원 |

출처: 정부24 홈페이지 정책정보(<https://www.gov.kr>),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s://opengov.seoul.go.kr>), 연합뉴스 (2019.08.16)기사(<https://www.yna.co.kr>), 에이블뉴스(2009.03.23)기사 (<http://ablenews.co.kr/News/News>)

Part 2 여성장애인 지원 법률 및 정책

6. 국내 복지사업 - 2)자녀양육/가사, 건강

| | 사업명 |
|---|--------------------------|
| 1 | 자녀양육지원 서비스(양육 및 돌봄) |
| 2 | 가사도우미 |
| 3 | 자녀교육 도우미(방문 교육) |
| 4 | 여성장애인 가족지원 |
| 5 | 여성장애인 식생활 건강관리 프로그램 |
| 6 | 여성장애인 운동 건강관리 프로그램 |
| 7 | 여성장애인 상담서비스 (심리·정서) |
| 8 | 여성장애인 건강검진 및 여성질환 치료비 지원 |

출처: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s://opengov.seoul.go.kr>),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http://nrc.go.kr>), 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https://kpcsports.koreanpc.kr>), 사회복지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socialservice.or.kr>), 에이블뉴스 (2016.12.26) 기사(<https://www.ablenews.co.kr>)

Part 2 여성장애인 지원 법률 및 정책

6. 국내 복지사업 - 3) 성

| | 사업명 |
|---|---------------------------------|
| 1 | 여성장애인 상담 및 권리구제 (성희롱, 성폭력 피해 등) |
| 2 | 여성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인식 교육(성교육) |
| 3 |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
| 4 | 여성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 |
| 5 | 여성용품(생리대 등) 지원사업 |

출처: 사단법인 경원사회복지회 홈페이지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안내(<http://happywithus.org>),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홈페이지(<http://wesay.or.kr>), 복지연합신문(2016.06.02.) 기사(www.bokjinews.com),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Part 2 여성장애인 지원 법률 및 정책

6. 국내 복지사업 - 4) 권익옹호

| | 사업명 |
|---|----------------------|
| 1 | 여성발달장애인 금전관리 교육 |
| 2 | 여성발달장애인 성년 후견 지원 |
| 3 | 장애인 법률지원 |
| 4 | 장애인옹호활동 |
| 5 | 권리 알기 (서비스 정보제공)교육 |
| 6 | 지역 내 안전망 구축 사업 |
| 7 | 자기옹호교육 (일상적 옹호 기술 등) |

출처: 장애여성공감 홈페이지(<https://wde.or.kr>),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성프란치스코 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fwc.or.kr), 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www.asrc.or.kr), 상록뇌성마비복지 홈페이지(www.slehab.or.kr), 동행목련 블로그(<https://m.blog.naver.com/nanumlotto/30164149476>),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2016), 독립적 권익옹호 실천 가이드



Part 2 여성장애인 지원 법률 및 정책

6. 국내 복지사업 - 5) 일자리/자기개발

| | 사업명 |
|---|-----------------------|
| 1 | 여성장애인 일자리사업 |
| 2 | 여성장애인 자조집단(멘토링 포함) |
| 3 | 여성장애인 문화여가 서비스 및 프로그램 |
| 4 | 여성장애인 평생학습 |
| 5 | 여성장애인 자립지원 |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s://www.koddi.or.kr>),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https://www.seoulrehab.or.kr>), 부평구 복지포털 홈페이지(https://www.icbp.go.kr/open_content/File/welfare),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Part 2 여성장애인 지원 법률 및 정책

6. 국내 복지사업 - 6) 발달, 고령장애인

| | 사업명 |
|---|-------------------------------|
| 1 | 고령 여성장애인 가사지원서비스 |
| 2 | 고령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식생활, 운동 등) |
| 3 | 고령 여성장애인 상담서비스 |
| 4 | 1인 여성가구에 대한 지원 |
| 5 | 여성 발달장애인 대상 임신·출산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
| 6 | 여성 발달장애인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
| 7 | 여성 발달 장애인 대상 성 인식교육 (성교육) |

출처: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www.gbrc.or.kr), 부산광역시 중구노인복지관 홈페이지(www.junggusilver.or.kr),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3), 박영주, 최세정(2013), 사회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socialservice.or.kr>),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홈페이지(<http://wesay.or.kr>)

Part 2 여성장애인 지원 법률 및 정책

6. 국내 복지사업 - 7) 문화여가

| 사업명 | |
|-----|-----------------------|
| 1 | 여성장애인 문화여가 서비스 및 프로그램 |

출처: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https://www.seoulrehab.or.kr>)

Part 2 여성장애인 지원 법률 및 정책

7. 한국사회 여성장애인 법과 정책 및 서비스에서의 시사점

- UN CRPD는 기존의 장애인의 문제를 시혜적복지차원에서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큰 변화를 이끌어냈음.
- 전문과 제3조일반원칙에서 남성과여성의 평등원칙명시, 제6조 장애여성과 장애소녀의 대한 다중적차별의 대상 인정, 이를 반영한 국내법 장애여성의 기본적권리보장에는 한계 있음.
- 장애인복지법등 국내법률에서 장애여성지원에 관한 조항이 존재하나 **프로그램형식으로 정책들이 나열되어 있고, 실제예산지원미흡.**
- 다중차별의 대상인 장애여성들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역량강화 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장애여성의 특성이 반영된 법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3 최근 여성장애인 관련 법과 제도 동향

Part 3 최근 여성장애인 관련 법과 제도 동향

1. 장애여성 지원 단독 법안 논의

- 제19대(2012년) 여성장애인지원법 발의, 제21대(2021년) 장애여성지원법안(2021.12.2) 발의.
- 여성장애인은 교육, 고용 등 여러분야에서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에 비해서도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등 기존의 법률로는 충분한 지원을 하기에 미흡하므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규정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여성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고용, 폭력피해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 임.
- 주요 쟁점: 법 필요성(기본법 vs 특별법), 법률 소관 부처(여성가족부 vs 보건복지부), 권리 기반의 기본권 보장, 전달체계 등

Part 3 최근 여성장애인 관련 법과 제도 동향

2. 중앙에서부터 지자체 정책으로 (커뮤니티케어 정책 발표)

<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 돌봄 비전 및 로드맵 >



Part 3 최근 여성장애인 관련 법과 제도 동향

2. 중앙에서부터 지자체 정책으로 (커뮤니티케어 정책 발표)

- 2018년 3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커뮤니티케어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11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함
- 2019년 지자체 8개 지역, 2020년 16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로 대상자를 구분하여 선도사업 실시
- 2021년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를 포괄한 융합형 모델로 8개 지역에서 실시 예정
- 2021년 '융합형 통합 돌봄 모델'은 대상 구분 없이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향후 보편적 통합 돌봄 서비스의 실행을 목표로 추진

Part 3 **최근 여성장애인 관련 법과 제도 동향**

2. 중앙에서부터 지자체 정책으로 (커뮤니티케어 정책 발표)

< 장애인분야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개요 >



Part 3 **최근 여성장애인 관련 법과 제도 동향**

3. 시설중심에서 지역사회로 탈 시설화 정책

- (21.8.2) 단계적인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추진을 위해 '탈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수립



Part 3 **최근 여성장애인 관련 법과 제도 동향**

3. 시설중심에서 지역사회로 탈 시설화 정책

-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복지부)결과, 전국 618개소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은 24,060명, 이중 **장애여성 9,336명(전체의 39.0%)**, 장애유형별 지적장애인 비율 78.86%로 가장 많고, 연령대별로는 31~40대 가장 많음

<연령대별 거주인원(성별)>
(단위: 명, %)

| 구분 | 10세 이하 | 11-20 | 21-30 | 31-40 | 41-50 | 51-60 | 61-70 | 71-80 | 81세 이상 | 무응답 | |
|----|--------|-------|-------|-------|-------|-------|-------|-------|--------|------|-------|
| 성별 | 남 | 1.58 | 5.06 | 12.61 | 14.78 | 13.02 | 8.93 | 4.00 | 0.88 | 0.13 | 0.00 |
| | 여 | 1.02 | 3.15 | 7.33 | 9.18 | 9.36 | 6.03 | 2.32 | 0.46 | 0.15 | 0.004 |
| 전체 | 2.60 | 8.22 | 19.94 | 23.95 | 22.38 | 14.96 | 6.32 | 1.34 | 0.28 | 0.00 | |

<장애유형별 거주인원(성별)>
(단위: 명, %)

| 구분 | 지체 | 뇌병변 |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정신 | 자폐 | 신장 | 뇌전증 | 기타 | 무응답 | |
|----|------|------|------|------|------|-------|-------|------|------|------|------|------|------|
| 성별 | 남 | 3.59 | 5.06 | 1.05 | 0.48 | 0.06 | 47.93 | 0.65 | 1.97 | 0.01 | 0.01 | 0.05 | 0.07 |
| | 여 | 2.24 | 2.95 | 0.78 | 0.19 | 0.04 | 30.93 | 0.54 | 1.27 | 0.04 | 0.01 | 0.05 | 0.05 |
| 전체 | 5.83 | 8.02 | 1.83 | 0.67 | 0.09 | 78.86 | 1.19 | 3.24 | 0.05 | 0.02 | 0.09 | 0.12 | |

Part 3 **최근 여성장애인 관련 법과 제도 동향**

4. 복지를 넘어 주거지원 정책 확대

- 탈 시설 정책에서 가장 핵심 정책으로 대두
- 서울시 지원주택 제도화로 발달장애인의 새로운 주거서비스 개발
- 탈 시설 로드맵에서 주거유지서비스 신규 개발 및 지원 명시

<(서울시) 지원 주택 운영: 주거+복지서비스 결합>

- (개념) 공공임대·매입임대 등을 통해 탈 시설 이후 **주거 제공 및 사례관리사를 배치**하여 지역거주생활 전반에 대한 주거유지서비스 제공
- (운영현황) **131호**('19년 68호, '20년 62호), '21년 예산 3,821백만원(시비 100%)
- (주거유지서비스) 입주지원·상담, 주택시설관리, 공과금 관리 등 주거 유지 지원, 의료·건강관리·취업 등 사회서비스 연계 관리
- (인력배치) 주거코디네이터 1: 장애인 6

Part 3 최근 여성장애인 관련 법과 제도 동향

5. 정신적 장애인 지원 서비스 확대

- 주거(집), 경제지원(직업), 활동 서비스, 사회적 관계망(지역주민), 의사소통, 건강관리, 사회참여 활동 -> 개인별 맞춤형 지원
- 발달장애인 주요 정책 및 제도: 탈 시설 정책, 주간활동서비스, 공공후견서비스, 재산관리 (장애인 신탁), 장애인 주치의, 발달장애인 거주병원행동 발달증진센터(10개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전국 29개) 확대
- 주간활동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는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 사업 수행은 저조, 활성화 기대

Part 3 최근 여성장애인 관련 법과 제도 동향

6. 최근 여성장애인 정책의 가장 큰 관심사

- 여성장애인지원을 위한 단독 법안 제정
- 탈 시설 - 지역사회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탈 시설 법 제정(부산/ 서울시 장애인 탈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2.6.21)
- 성인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돌봄 지원 확대(2022. 5.30. 발달장애인법 개정안 본 회의 통과(통합돌봄서비스) : 2년 뒤 시행, '도전적 행동' 최중증발달장애인 대상 긴급 돌봄, 자립생활지원 등
- 장애인 주치의 (중증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 등 건강권 확보
- 여성장애인 진료를 위한 장애 친화 산부인과 지정 등 모성권 지원
- 폭력 피해자 지원 ,쉼터 이후 자립생활지원 등



출처

보건복지부(2017),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2020), 장애인 거주시설 권속조사

보건복지부(2020), 2020년 장애인학대연발

보건복지부(2021), 2021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문은영, 강희영(2013), 서울시 고령1인가구여성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박영주, 최세경(2013), 1인 가구 통합지원 정책방안, 대구여성가족재단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2021), 2021년 장애인 정책예산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2021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한국장애인복지연합회(2016), 독립적 권익증호 실천가이드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www.gbrc.or.kr)

국가인권위원회(www.humanrights.go.kr)

국립재활원 홈페이지(<http://nrc.go.kr>)

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https://kpcsports.koreanc.or.kr>)

통일북권 블로그(<https://m.blog.naver.com/nanumlotto/30164149476>)

북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복지연합신문(2016.06.02.) 기사(www.bokjinews.com)

부산광역시 중구노인복지관 홈페이지(www.junggusilver.or.kr)

부평구 복지포털 홈페이지(https://www.icbp.go.kr/open_content/file/welfare)

사단법인 장애인사회복지회 홈페이지

사회서비스콜센터(<https://www.socialservice.or.kr>)

상록노성마비복지관 홈페이지(www.slrehab.or.kr)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https://www.seouirehab.or.kr>)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s://opengov.seoul.go.kr>)

성로복지소 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http://nrc.or.kr>)

안산시우리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www.asrc.or.kr)

에이블뉴스(2009.03.23.)기사 (<http://ablenews.co.kr/News/News>)

에이블뉴스(2016.12.26.) 기사(<https://www.ablenews.co.kr>)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안내(<http://happywithus.org>)

연합뉴스(2019.08.16.)기사(<https://www.yna.co.kr>)

장애여성공감 홈페이지(<https://wde.or.kr>)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s://www.koddi.or.kr>)

한국정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홈페이지(<http://wesay.or.kr>)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부 록

| | |
|------------------------------------|-----|
| 참고자료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03 |
| 참고자료 2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조례 | 231 |
| 참고자료 3 서울시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 의사소통 카드 | 235 |





- 참고자료 1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023. 1. 28.] [법률 제18334호, 2021. 7. 2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3. 21., 2009. 5. 22., 2010. 5. 11., 2011. 3. 29., 2011. 6. 7., 2013. 3. 23., 2016. 2. 3., 2017. 9. 19., 2020. 6. 9.>

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단체를 말한다.



제16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 가) “전자정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한국수어,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획득·가공·보유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 다)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9. “정보통신”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10.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11. “문화·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관광활동”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의 용역 등을 제공받거나 관광에 딸린 시설을 이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13.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
14. “가정 및 가족”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정 및 가족을 말한다.
15.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16.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17.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



18.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19.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20.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1.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차별판단)

- ①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실태조사)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이 법의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시설·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차별금지

제1절 고용

제10조(차별금지)

- ①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 ②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 ①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의 비용부담 방식 및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교육

제13조(차별금지)

-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6. 7.>
-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1.>
- 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형·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⑥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

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11.>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2. 3., 2017. 12. 19.>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의를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 ④ 제3항에 따른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7. 27.>

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분리·배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11.>
- ②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⑧ 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2. 3.>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9호·제20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3호·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2. 3., 2017. 9. 19.>

② 행위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③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1. 7. 27.>

④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1., 2016. 2. 3., 2021. 7. 27.>

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1., 2013. 3. 23., 2017. 7. 26., 2021. 7. 27.>

⑥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9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11., 2014. 1. 28., 2017. 12. 19., 2021. 7. 27., 2021. 12. 7.>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 ⑦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



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 제2항에 따른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5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5. 11., 2013. 8. 13., 2021. 7. 27.>

[제목개정 2010. 5. 11.]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3. 29.>

③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련된 동의행위를 대리하는 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화,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16. 2. 3., 2017. 12. 19.>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9. 19.]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 ①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①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1., 2012. 10. 22.>
- ⑦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참정권)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5절 모 · 부성권, 성 등

제28조(모 · 부성권의 차별금지)

- ①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 · 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교육책임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그 보육교직원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등은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6. 7.>
-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위탁 혹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피임 및 임신 · 출산 · 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정보 · 활동보조 서비스 등의 제공 및 보조기기 · 도구 등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 출산 · 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 교육 · 지원 · 감독하여야 한다.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 ①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 ②가족 · 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 · 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 ·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6절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 ①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 자유(이하 이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가족·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 ①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가진다.



- ②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방식의 지원
 -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 ④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⑥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제3호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38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39조(직권조사)

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40조(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 ①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준용규정)

- ①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진정의 절차·방법·처리, 진정 및 직권에 따른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진정 및 직권조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2조(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하거나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제43조(시정명령)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하여 위원회에 시정명령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⑥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제43조의2(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차별행위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피해자, 진정한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44조(시정명령의 확정)

①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제4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①법무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 ②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46조(손해배상)

-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 ③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 ①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 ①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 ③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제6장 벌칙

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③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1.>

④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과태료)

①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 5. 11.>

③ 삭제 <2010. 5. 11.>

④ 삭제 <2010. 5. 11.>

⑤ 삭제 <2010. 5. 11.>

부칙 <제8341호, 2007. 4. 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부터 제37조까지의 각 차별영역에 규정된 세부내용별 시행시기 및 적용대상은 해당 규정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소위원회 설립준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0조의 소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소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③(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16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부칙 <제8974호, 2008. 3. 21.> (건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 부칙 제13조제4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1일부터 . . . <생략> . . .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㉔ 법률 제8341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5호 중 “제2조제1항제2호·제5호 및 제6호” 를 “제2조제1항제2호·제6호 및 제7호” 로 한다.

㉕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9705호, 2009. 5. 22.>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가목 전단 및 같은 호 나목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1호” 를 각각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 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 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 로 한다.

⑧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280호, 2010. 5. 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6항(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부 내용별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은 같은 항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0465호, 2011. 3. 29.>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다목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을 “「개인정보 보호법」” 으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89호, 2011. 6. 7.> (영유아보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제13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제28조제3항 중 “보육시설 및 그 종사자”를 “어린이집 및 그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㉖부터 ㉚까지 생략

부칙 <제11522호, 2012. 10.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3>까지 생략

<48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48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35호, 2013. 8. 13.> (전기통신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 중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16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부칙 <제12365호, 2014. 1. 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78호, 2016. 2. 3.> (한국수화언어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나목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고, 제11조제1항제6호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며, 제14조제1항제4호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고, 제20조제2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며, 제21조제1항 전단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화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고, 제23조제3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⑨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하는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3>까지 생략

<36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6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893호, 2017. 9. 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72호, 2017. 12. 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40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실시하는 실태



조사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실시한다.

부칙 <제17344호, 2020. 6. 9.>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가목 및 나목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⑫부터 ⑳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792호, 2020. 12. 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34호, 2021. 7. 27.>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47호, 2021. 12. 7.> (도서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8조”를 “제19조”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 참고자료 2 -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

[시행 2015. 7. 30.] [서울특별시조례 제5968호, 2015. 7. 30., 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모성 보호와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여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차별금지)

여성장애인은 임신·출산·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모성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 (계획수립 등)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 여성정책 등 관련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 ①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다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임신·출산·양육 지원)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2. 출산에 따른 사업
3. 양육에 따른 사업
4.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보제공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여성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968호, 2015.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자료 3 -

서울시장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 의사소통 카드





처음 만나는 사람과 조금 더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카드를 제작했어요!

소통 하는 방법을 내가 직접 대화 상대방에게 알려주어
대화 상대방이 나의 의사소통권리를 지켜줄 수 있어요!



의사소통 카드

서울시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저는 _____ 입니다.
저는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요.

저와 이렇게 소통해주세요!
(해당하는 곳에 √ 체크)

의사소통방법

-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 말하는 속도가 느릴 수 있으니 기다려주세요.
- 저는 몸짓으로 이야기해요.
-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 쉬운 단어를 사용해 주세요.
- 제 정면에서 말씀해 주세요.
- "네, 아, 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주세요.
- 이해하기 쉬운 사진이나 그림을 제공해 주세요.
- 제 말을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말씀해 주세요.
- 옆에 있는 사람이 대답할 때도 있어요.

1. 나의 이름을 먼저 쓰고

저는 _____ 입니다.
저는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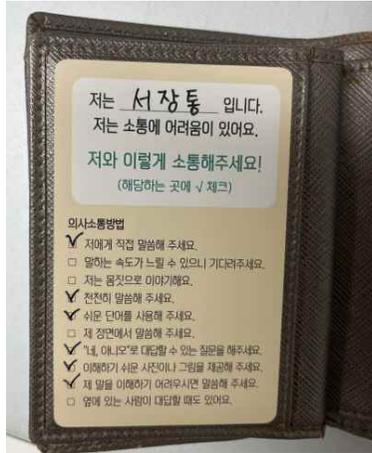
2. 대화 상대방이 나와 소통할 때 지켜야 하는 것들을 체크해서

저와 이렇게 소통해주세요!
(해당하는 곳에 √ 체크)

의사소통방법

-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 말하는 속도가 느릴 수 있으니 기다려주세요.
- 저는 몸짓으로 이야기해요.
-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 쉬운 단어를 사용해 주세요.
- 제 정면에서 말씀해 주세요.
- "네,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주세요.
- 이해하기 쉬운 사진이나 그림을 제공해 주세요.
- 제 말을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말씀해 주세요.
- 옆에 있는 사람이 대답할 때도 있어요.

3. 보여주세요!



지갑에 넣어서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휠체어에 부착할 수도 있어요.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의사소통 카드에서 사용한 이미지는 센터에서 개발한 커뮤니 그림상징의 '사회어' 범주의 상징입니다.

커뮤니 그림상징은 정보 게시판 >커뮤니 그림상징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파일은 [서울시장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서울시장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검색-> 정보 메뉴 클릭 ->
의사소통관련자료 메뉴 클릭 -> 공지사항 두 번째 의사소통카드 클릭->
맨밑에 “의사소통 카드ZIP 다운로드” 클릭!

제16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발행일 : 2022년 10월 17일

발행인 : 정 종 남

발행처 :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 소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빌딩 1707호

전 화 : 02) 908-7776

팩 스 : 0303-0799-1758

홈페이지 : <http://kbcil.or.kr/>

※ 본 자료는 2022년 서울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